

관세연구 18-03

#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18. 6

#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

2018. 6.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 동 규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 다 랑 관세사

김 미 정 연구원

# 목차

I. 서론 .....	11
II. 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	13
1. 반덤핑조치 현황 .....	13
가. 운영현황 .....	14
나. 운영방법 .....	18
2.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	19
가. 덤핑의 성립요건 .....	20
나. 피해판정요소 .....	22
III.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사례 분석 .....	29
1. 미국 .....	29
가. 반덤핑조치 현황 .....	29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33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37
2. 중국 .....	54
가. 반덤핑조치 현황 .....	54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57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60

3. EU .....	79
가. 반덤핑조치 현황 .....	79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83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87
4. 호주 .....	103
가. 반덤핑조치 현황 .....	103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107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109
5. 주요국의 사례 요약 및 비교 .....	124
가. 반덤핑 조치 현황 .....	124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126
다. ‘실질적 피해’ 사례 .....	127
 IV. 결론 .....	 130
 참고문헌 .....	 133

## 표 목차

〈표 II-1〉 2017년 반덤핑규제 상위 10개국 현황 .....	17
〈표 II-2〉 연도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	17
〈표 II-3〉 2017년 기준 국가별 對韓 반덤핑조치 현황 .....	18
〈표 II-4〉 2017년 기준 품목별 對韓 반덤핑조치 현황 .....	18
〈표 II-5〉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의 피해판정요소 .....	23
〈표 III-1〉 미국 반덤핑제도 관련 법적 근거 .....	34
〈표 III-2〉 미국의 덤핑물품(페로바나듐) 규제 경과 내용 .....	40
〈표 III-3〉 동종물품의 고용·임금·노동생산성 추이 .....	46
〈표 III-4〉 미국의 덤핑물품(송유관) 규제 경과 내용 .....	47
〈표 III-5〉 동종물품과 비교한 덤핑물품의 저가와 고가판매 경험 .....	50
〈표 III-6〉 동종물품의 평균 생산능력 등 추이 .....	52
〈표 III-7〉 동종물품의 재무성과 추이 .....	53
〈표 III-8〉 미국의 덤핑물품(강철못) 규제 경과 내용 .....	53
〈표 III-9〉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단가와 이익 비교 .....	63
〈표 III-10〉 중국의 덤핑물품(스티렌) 규제 경과 내용 .....	65
〈표 III-11〉 중국의 덤핑물품(메탈이소부틸케톤) 규제 경과 내용 .....	72
〈표 III-12〉 중국의 덤핑물품(태양광 폴리실리콘) 규제 경과 내용 .....	78
〈표 III-13〉 EU 사례 1)의 개요 .....	88
〈표 III-14〉 EU 역내 피제소국의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	90
〈표 III-15〉 EU 역내 산업의 생산, 생산력, 설비가동률 .....	90

〈표 III-16〉 EU 역내 산업의 생산, 생산력, 설비가동률 .....	91
〈표 III-17〉 EU 역내 판매가격 및 생산 비용 .....	92
〈표 III-18〉 EU 역내 시장의 수익성, 현금흐름, 투자, 투자수익률 .....	93
〈표 III-19〉 EU 사례 2)의 개요 .....	94
〈표 III-20〉 EU 역내 피제소국의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	95
〈표 III-21〉 EU 역내 피제소국의 수입가격 .....	96
〈표 III-22〉 EU 역내 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	96
〈표 III-23〉 EU 역내 산업의 수익성, 현금흐름, 투자 및 투자수익률 .....	97
〈표 III-24〉 EU 사례 3)의 개요 .....	99
〈표 III-25〉 EU 산업의 소비량 .....	99
〈표 III-26〉 EU 역내 피제소국의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	100
〈표 III-27〉 EU 역내 피제소국의 수입가격 .....	100
〈표 III-28〉 EU 역내 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	101
〈표 III-29〉 EU 역내 산업의 판매가격 및 생산비용 .....	101
〈표 III-30〉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시장점유율, 평균가격 .....	102
〈표 III-31〉 호주 사례 1)의 개요 .....	110
〈표 III-32〉 호주 사례 2)의 개요 .....	114
〈표 III-33〉 호주 사례 3)의 개요 .....	119
〈표 III-34〉 주요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 국제비교 .....	125

## 그림 목차

[그림 II-1] 전 세계 반덤핑조사 개시(Initiation) 현황 .....	14
[그림 II-2]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Measures) 현황 .....	15
[그림 II-3] 전 세계 반덤핑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현황 .....	16
[그림 III-1] 최근 5년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국별 건수 .....	30
[그림 III-2] 1977~1994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31
[그림 III-3] 1995~2012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31
[그림 III-4] 최근 5년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32
[그림 III-5] 미국의 대(對)우리나라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33
[그림 III-6]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시장 비중 추이 .....	38
[그림 III-7] 덤핑 및 국내 동종물품의 미국 전체수요와 시장점유율 추이 .....	42
[그림 III-8]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시장 비중 추이 .....	44
[그림 III-9] 동종물품의 생산능력·생산량·설비가동률 추이 .....	45
[그림 III-10] 동종물품의 매출 등과 이익률 추이 .....	47
[그림 III-11] 덤핑 및 국내 동종물품의 미국 전체수요와 시장점유율 추이 .....	49
[그림 III-12] 강철못의 단가 추이 .....	51
[그림 III-13] 최근 5년간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상국별 건수 .....	55
[그림 III-14] 2002~2012년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55
[그림 III-15] 최근 5년간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56
[그림 III-16] 중국의 대(對)우리나라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	57
[그림 III-17] 덤핑물품 수입량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61

[그림 III-18]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추이 .....	62
[그림 III-19] 동종물품의 국내 수요와 생산능력·생산량·설비가동률 추이 .....	63
[그림 III-20] 동종물품의 세전이익과 투자수익 추이 .....	64
[그림 III-21] 동종물품의 판매량·재고와 매출액·현금흐름 추이 .....	65
[그림 III-22] 덤핑물품 수입량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67
[그림 III-23] 국내수요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	68
[그림 III-24]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추이 .....	69
[그림 III-25] 동종물품의 설비가동률과 매출액·시장점유율 추이 .....	70
[그림 III-26] 동종물품의 세전이익과 투자수익 추이 .....	71
[그림 III-27] 동종물품의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추이 .....	72
[그림 III-28]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추세 .....	74
[그림 III-29]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추이 .....	75
[그림 III-30] 동종물품의 국내수요와 생산량·생산능력·설비가동률 추이 .....	76
[그림 III-31] 동종물품 판매량과 매출액 추이 .....	77
[그림 III-32] 동종물품 재고량 추이 .....	77
[그림 III-33] 최근 5년간 EU의 반덤핑조사 국가 및 건수 현황 .....	80
[그림 III-34] EU의 1988~1994년 기간 중 품목 구성 .....	81
[그림 III-35] EU의 1995~2012년 기간 중 품목 구성 .....	82
[그림 III-36] EU의 2013~2017년 기간 중 품목 구성 .....	82
[그림 III-37] EU의 對韓 반덤핑규제 대상품목 .....	83
[그림 III-38] EU 반덤핑규정상 실질적 피해의 검토 요소 .....	85
[그림 III-39] 최근 5년간 호주의 반덤핑조사 국가 현황 .....	104
[그림 III-40] 호주의 2000~2012년 기간 중 품목 구성 .....	105
[그림 III-41] 호주의 2013~2017년 기간 중 품목 구성 .....	106
[그림 III-42] 호주의 對韓 반덤핑규제 대상품목 .....	106
[그림 III-43] 호주의 피제소국 대상 수입제품의 추이 .....	111

[그림 III-44] 호주 제소기업의 국내 판매량 .....	112
[그림 III-45] 호주 제소기업의 총판매수익 및 비용 .....	112
[그림 III-46] 호주 제소기업의 총이윤 및 수익성 .....	113
[그림 III-47] 호주 변압기 산업의 시장점유율 .....	115
[그림 III-48] 호주 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	116
[그림 III-49] 호주 제소기업의 총매출 및 총비용 .....	117
[그림 III-50] 호주 제소기업의 총이윤 및 수익성 .....	117
[그림 III-51] 호주의 A4 복사용지 시장 .....	120
[그림 III-52] 호주 제소기업의 국내 시장 판매량 .....	121
[그림 III-53] 호주 제소기업의 국내가격 및 제조 및 판매원가(CTMS) .....	122
[그림 III-54] 호주 제소기업의 이윤 및 수익성 .....	123



## I. 서론

-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해 국제 무역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 간 무역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철강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철강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무역 갈등이 고조됨
  
- 최근 무역 분쟁의 화두인 반덤핑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주요국별 증점적으로 규제하는 반덤핑품목과 그 품목에 대해 국내기업이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요소가 각각 상이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질적 피해'와 관련하여 이희성(2018)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동향과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 시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사례를 문헌조사의 방법으로 연구함
  - 선행연구는 품목의 지정 없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개시문서에 나타난 미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함
    -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 사례는 총 5가지로 ① 수입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② 미국 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격의 하락 ③ 최근 1년 미만의 단기간 수입량의 증가 ④ 해외기업의 생산능력과 대미 수출집중 정책 ⑤ 미국 내 생산능력, 가동률, 고용 감소 등이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더하여 주요국의 '실질적인 피해' 판정 사례를 각 국가의 반덤핑제소 빈도가 높은 품목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당 주요국가의 반덤핑 조사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실질적 피해' 판정사례 보고서는 각 국가의 반덤핑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보고서에 한하며, 재심사례를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I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상 반덤핑 제도의 운영현황, 운영방법 및 덤핑 성립요소와 '실질적 피해'의 개념을 조사함
  - 제III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및 호주의 반덤핑제도 현황, '실질적 피해'의 법적 근거 및 이와 관련된 판정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국제비교함
  - 제IV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맺으며 요약함

## II. 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 1. 반덤핑조치 현황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란 다음의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sup>1)</sup>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함<sup>2)</sup>
    -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 본 연구의 조사 대상국은 전 세계에서 반덤핑조치의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인 미국, EU, 중국, 호주로 선정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수출국 가운데 중국은 제1위, 미국은 제2위, 호주는 제6위, EU에 해당하는 독일은 제12위로 조사됨<sup>3)</sup>
      - 이외 다른 국가는 제3위 베트남, 제4위 홍콩, 제5위 일본, 제7위 인도, 제8위 대만, 제9위 싱가포르, 제10위 멕시코, 제11위 필리핀 등임
  
  - 또한 반덤핑규제가 실제 조치의 부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사의 개시만으로도
- 
- 1)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경제학적 의미의 덤핑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동 규정은 덤핑을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 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2)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lassificationAndDefinition.screen?menuid=ntb040101>(검색일자: 2018. 5. 9.)
- 3)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검색일자: 2018. 5. 9.)

위협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조사개시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음

- 반덤핑조사가 빈번하게 개시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사개시 자체가 무역 규제  
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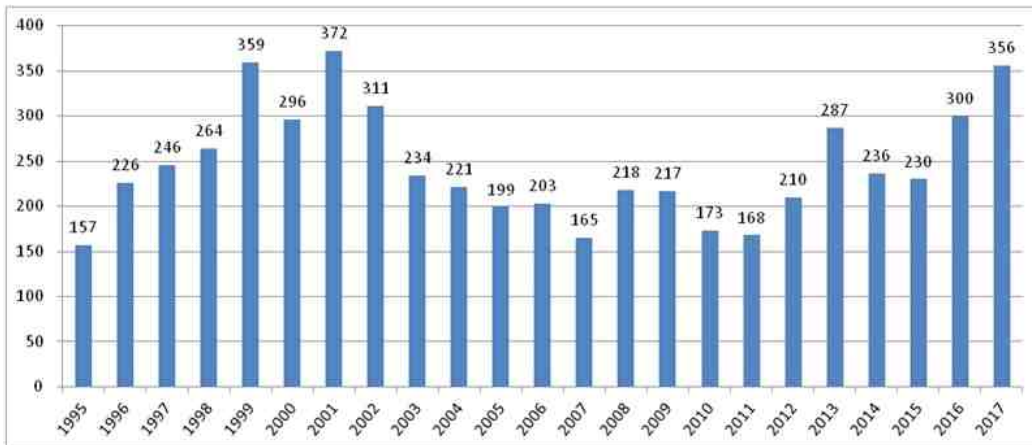
## 가. 운영현황

### 1) 전 세계

- 반덤핑제도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출범한  
이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역구제(Trade Remedy) 수단이며, 최근 들어 반  
덤핑조치의 발동이 급증하고 있음
- WTO에 따르면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7년 12월 말까지 반덤핑조사의 개  
시(Initiation) 건수는 총 5,648건에 달함
  - 1995~2017년 기간 중 1995년 157건에 불과하였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356건을 기록함

[그림 II-1] 전 세계 반덤핑조사 개시(Initiation)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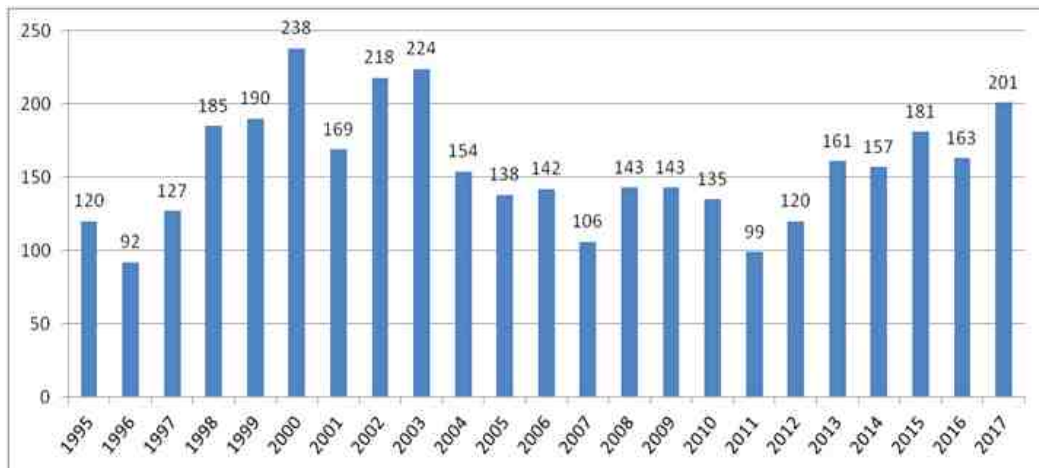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상기 기간 중 실제 반덤핑조치의 부과(Measures) 건수는 총 3,405건으로 집계됨
  - 1995~2017년 기간 중 1995년 120건에 불과하였던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는 2000년 23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163건을 기록함

[그림 II-2]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Measures)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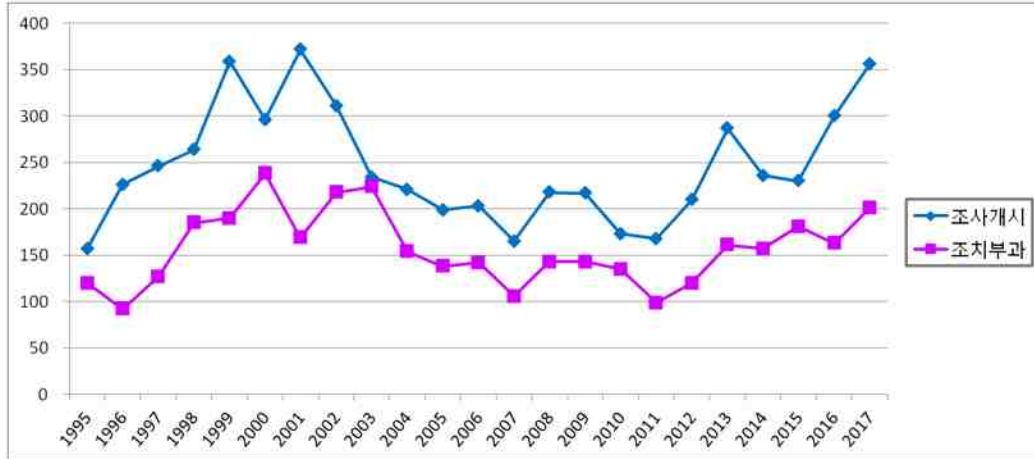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반덤핑조사의 개시와 반덤핑조치의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2017년 기간 중 2003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조사개시에 비해 실제 조치부과는 낮은 편이며, 조치부과 건수는 조사개시 건수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1-3] 전 세계 반덤핑조사 개시와 조치 부과 현황

(단위: 건)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2017년 말 기준 조사 개시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인도이며 뒤이어 미국, 아르헨티나, 터키, 호주, EU, 브라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순임
  - 조사 대상국인 미국은 2위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47건, 호주는 5위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한 15건, EU는 6위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13건, 중국은 8위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2건을 보임
  
- 시행 중인 국가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터키, EU,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의 순임
  - 조사 대상국인 미국은 1위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308건, EU는 110건을 차지하여 5위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중국은 6위로 전년 대비 4.1% 감소한 93건, 호주는 9위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한 65건을 보임

〈표 II-1〉 2017년 반덤핑규제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건, %)

순위	조사 개시(Initiation)			시행 중(in force)		
	국가명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국가명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1	인도	80	15.9	미국	308	7.7
2	미국	47	27.0	인도	272	11.5
3	아르헨티나	29	16.0	브라질	162	3.8
4	터키	21	23.5	터키	156	0.0
5	호주	15	-11.8	EU	110	0.0
6	EU	13	-7.1	중국	93	-4.1
7	브라질	13	18.2	아르헨티나	84	1.2
8	중국	12	140.0	캐나다	71	16.4
9	캐나다	7	-50.0	호주	65	16.1
10	멕시코	6	0.0	멕시코	65	1.6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1) 우리나라

□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1995~2016년 기간 중 7.5%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으로는 5.3% 수준임

〈표 II-2〉 연도별 對韓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1995-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전 세계	3,861	168	210	287	236	230	300	356	5,648
한국대상	273	11	22	25	18	17	32	19	417
비중	7.1	6.5	10.5	8.7	7.6	7.4	10.7	5.3	7.4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대상 반덤핑조치 국가는 미국이 총 28건으로 제1위 규제국이며, 인도, 중국, 브라질·터키, 캐나다, 호주, 태국, EU, 인도네시아 순임

〈표 II-3〉 2017년 기준 국가별 對韓 반덤핑조치 현황

(단위: 건)

국가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터키	캐나다	호주	태국	EU	인니	기타	전체
건수	28	25	13	11	11	10	10	8	6	5	28	152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대상 반덤핑조치 품목은 철강금속이 전체의 70건 (46.1%)으로 제1위 규제품목이며, 화학 35건(23%), 플라스틱/고무 20건(13.2%), 섬유 13건(8.6%), 전기/전자 8건(5.3%), 지와판지 2건(1.3%) 순임

〈표 II-4〉 2017년 기준 품목별 對韓 반덤핑조치 현황

(단위: 건)

품목	철강/ 금속	화학	플라스 틱/고무	섬유	전기 /전자	지와 판지	기타	전체
건수	70	35	20	13	8	2	4	152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나. 운영방법

- 반덤핑제도는 GATT 1947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WTO 회원국들은 반덤핑협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WTO 회원국은 무역상대국의 수출자에 의한 덤핑으로 인하여 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덤핑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반덤핑협정 제2.1조에서는 덤핑은 수출국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협정 제3조에서는 피해의 정의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덤핑조사기관이 피해 판정을 위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기준들은 덤핑판정을 위한 기준보다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수입상품의 덤핑이 존재하고(반덤핑협정 제1조 및 제2조) ② 수입상품으로 인해 국내산업(국내 동종상품)의 실질적인(material) 피해가 발생하며(반덤핑협정 제3조) ③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causal link)가 존재할 때(반덤핑협정 제3조),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한편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해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다음과 같이 각주를 통해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협정 각주 9는 피해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을 의미한다고 규정

## 2.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 본 절에서는 WTO 회원국의 국내 반덤핑법령의 모태가 되는 「WTO 반덤핑협정」 상 덤핑의 성립요건과 덤핑의 성립요건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판정 요인을 살펴보도록 함

## 가. 덤핑의 성립요건

- WTO 반덤핑협정 제5.2조는 ① 덤핑행위의 존재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③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수입국 정부가 덤핑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 덤핑행위의 존재

- 덤핑행위의 존재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2조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고 규정함
-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Normal Value)이란 반덤핑 조사기간 중 수출국 내 거래가격(home market sales, 내수판매가격)을 의미함<sup>4)</sup>
- 단 ①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③ 소규모 판매로 인해 적절한 비교가 불가한 경우의 정상가격은 반덤핑 조사대상기업의 제3국 판매가격(third-country sales)이나 조사당국이 산정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CV)을 기초로 사용함

###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존재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 제3조 각주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threat)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material retardation)이 초래된 경우 피해가 존재한다고 봄<sup>5)</sup>

4)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적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지』 VOL.13, 2018.5, p.3

5) WTO 반덤핑협정 제3조 각주 9

-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에서 피해의 판정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덤핑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객관적인 검토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객관적 검토의 대상으로는 ① 덤핑물품의 규모와 덤핑 수입품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②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임
  - WTO 반덤핑협정 제3.1조를 피해의 발생 과정에 비추어 해석하면, 당초 상당량의 덤핑 수입의 결과로 국내산업의 동종물품의 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의 경영상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음<sup>6)</sup>
  
- 피해의 객관적인 입증 방법으로, WTO 반덤핑협정 제3.2조는 수입국의 덤핑 수입의 물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또는 수입국의 동종물품 가격이 덤핑 수입품의 가격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함
  
-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는 덤핑 수입의 규모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시장가격의 영향을 검토한 후, 그러한 덤핑 수입의 결과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요소와 지표(all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함
  - 제3.4조에서 열거한 덤핑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제요소와 지표(이하 '피해판정요소')는 총 15가지이며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음
    - 1그룹: ① 판매 ② 이윤 ③ 생산량 ④ 시장점유율 ⑤ 생산성 ⑥ 투자수익률 ⑦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 2그룹: ⑧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3그룹: ⑨ 덤핑마진의 크기
    - 4그룹: ⑩ 현금흐름 ⑪ 재고 ⑫ 고용 ⑬ 임금 ⑭ 성장 ⑮ 자본 또는 투자조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6) 안민호·이장완, 「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11, p.221

### 3) 덤핑과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 존재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는 덤핑의 효과로 인해(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규정함<sup>7)</sup>
  - 덤핑 수입품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수입국이 제시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함
  - WTO는 추가적으로 산업피해를 야기하는 덤핑효과 이외의 요인들에 의한 피해 부분을 덤핑 수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덤핑 이외 요인들의 예로는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제한적 무역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 등이 있음

#### 나. 피해판정요소<sup>8)</sup>

- WTO 반덤핑협정은 피해판정요소의 분석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WTO 분쟁사례를 통해 도출된 방법들을 실무적인 관점으로 요약 및 정리함

7)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론적 방법과 이원론적 방법이 있음. 일원론적 방법(unitary approach)은 덤핑이 없는 경우의 국내산업 상태를 추정하고 이를 덤핑이 있는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임. 이원론적 방법(bifurcated approach)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지 분석하는 피해분석(injury test)과 덤핑이 미소수준(de minimis) 이상으로 그러한 피해에 기여했는지 분석하는 인과관계분석(causation test)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마진분석과 추세분석 등이 이에 해당함. 자료: 안민호·이장완(2011), p.225

8) 안민호·이장완(2011), pp. 226~246

-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 규정한 15개의 피해판정요소를 평가하고 검토함에 있어, 각 요소별로 반드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인 인과관계 분석도 포함되어야 함
- 제3.4조에서 15개의 피해판정요소에 대해 회원국 덤핑조사기관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경제지표를 4개의 그룹으로 보고 각 그룹에 속한 하나의 경제지표만을 검토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에 WTO Thailand-H-Beams 분쟁 패널은 15개의 경제지표 모두 독립적인 검토요소라고 판단하였음<sup>9)</sup>

〈표 II-5〉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의 피해판정요소

구분	검토대상 경제지표	
1그룹	판매(sale)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이윤(profits)	
	생산량(output)	
	시장점유율(market share)	
	생산성(productivity)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s)	
	설비가동률(utilization of capacity)	
2그룹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affecting domestic prices)	
3그룹	덤핑마진의 크기(the magnitude of the margin of dumping)	
4그룹	현금흐름(cash flow)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재고(inventories)	
	고용(employment)	
	임금(wages)	
	성장(growth)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ability to raise capital or investments)	

자료: WTO 제3.4조 본문 활용하여 저자 작성

9) Panel report on Thailand - H-Beams, para. 7.229.; 이재형, 「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에 대한 법적 쟁점의 연구」, 『통상법률』 제81권, 2008.6, p.158

### 1) 1그룹: 경제지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 판매(sale)는 판매수익(sales revenue or value)과 판매량(sales volume)의 감소 여부를 검토하며, 국내의 수요와 내수판매가격의 변화를 함께 분석해야 함
  -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점유율 또는 내수판매가격의 하락이 동반된 경우가 발생한다면 피해의 긍정적 지표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하여 분석해야 함
  
- 이윤(profits)은 일반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뜻하며 이윤의 감소는 피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긍정적 지표임<sup>10)</sup>
  - 국제회계기준(IFRS)은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기재의무 또한 없으므로 회사 간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음
    - 손익 분석 시 주석공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생산량(output)은 국내산업의 판매, 자가소비 및 임가공생산을 위한 상품 산출량으로 구분하고 국내 수요, 경쟁, 시장가격 및 원가변동 등과 연계하여 감소 여부를 분석하여야 함
  - 가령 생산량의 감소 원인이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증대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국내산업의 내수판매량(volume)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내 생산품, 덤핑 수입품 및 기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을 하나의 표에서 비교 분석하여 감소 여부를 검토함
  - 시장점유율의 감소 여부는 내수판매가격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가 국내산업의 내수판매가격 하락

10) 지현미·최은실(2010), p.101 재인용; 안민호·이장완(2011), p.226

을 통한 방어 전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덤핑의 피해는 인정될 수 있음

- 생산성(productivity)은 생산량과 자원투입 간의 관계로서 일반적으로 1인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분석함
-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s)은 세전순이익을 순자산(자본)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자본의 정확한 계산과 세전순이익이 자본에 적정히 대응하였는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설비가동률(utilization of capacity)은 실제생산량을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설비가동률의 감소는 생산량과 생산능력의 지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생산능력은 설계생산능력, 기대(유효)생산능력 및 피크능력 등으로 구분되므로 설비가동률 감소 분석에 있어 생산능력의 성격을 고려해야 함
    - 설계생산능력은 이상적인 여건 내에서 이론적으로 최대 생산능력을 말하며, 기대(유효)생산능력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일정기간 중 생산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마지막으로 피크능력은 산업이나 임시직을 포함한 단기적으로 유지되는 생산능력을 말함

## 2) 2그룹: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affecting domestic prices)

- WTO 제3.4조에서 말하는 국내가격(domestic prices)이란 수입품의 내수판매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동종물품의 국내산업 내수판매가격을 뜻함
  - WTO 제3.1조와 제3.2조의 국내가격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으로 내국 물품과 외국물품의 여부를 불문하는 반면 제3.4조의 국내가격은 국내산업이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에 한정함

-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란 덤핑 수입의 영향이 아닌 국내산업의 영향에 의해 국내가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요소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원재료 가격, 제조원가, 경쟁가격, 대체재 및 판매 관행의 변화 등이 있음
-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 있어, 내수판매가격의 하락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그 하락 추세를 분석한 뒤 피해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가령, 내수판매가격의 하락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함께 존재한다면, 단순한 내수판매가격의 하락을 피해의 긍정지표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의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관측해야 함
    - 이 경우 내수판매가격의 하락폭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폭을 능가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3) 3그룹: 덤핑마진의 크기(the magnitude of the margin of dumping)

-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s)<sup>11)</sup>의 규모를 상회하여 크면 클수록 피해의 긍정적 지표로 봄
- 덤핑마진의 크기 분석 시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와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단순한 저가판매 정황만으로 덤핑 피해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미국의 마진분석(margin analysis)에 따르면 저가판매는 덤핑 이외의 요인에서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로, 수입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 가격경쟁의 결과이며 이를 덤핑으로 인한 피해로 오인해서는 안 됨
- 덤핑마진의 크기 분석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지표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음<sup>12)</sup>

11) 미소덤핑마진은 덤핑마진(수출국내 통상거래가격- 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이하인 경우를 뜻함

12) 안민호·이장원(2011), p.230

- 수입국 내의 저가판매 규모가 덤핑마진 규모보다 현저히 크다면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피해판정요소라기보다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지표의 성격에 가까움

#### 4) 4그룹: 경제지표에 미치는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 현금흐름(cash flow)의 단기간 분석 시 부(負)가 나타나거나 기초현금 대비 기말현금이 감소한 경우 유의한 피해판정 지표로 볼 수 있음
  - 현금흐름의 분석은 영업 현금흐름에 포함된 재무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가령 판매 감소로 인해 영업 현금흐름이 감소하였고 만회를 위해 차입을 늘리는 경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증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영업 현금흐름의 감소가 희석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재고(inventories)수준이 높은 경우 판매 둔화의 조짐이므로 피해판정의 유의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분석 시 해당 산업 환경과 처해진 상황을 함께 해석해야 분석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가령 계절물품, 재고유지가 어려운 물품, 재고유지가 필요없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의 상황과 같이 재고수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판정 시 기계적으로 기말재고량을 집계하여 재고수준을 분석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용(employment)은 종업원 수(headcount) 또는 작업시간으로 표현되며 1인당 판매나 1인당 생산성의 추세와 비교하여 분석함
  - 고용의 감소는 기업의 판매, 시장점유율 및 이윤 감소에 대응하므로, 피해판정의 긍정적 지표이며 후행 지표로 볼 수 있음
    - 고용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경직성을 띠므로 실제 고용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임금(wages)의 감소는 그 자체로 기업이윤을 높여주는 요소이므로 임금의 감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추세를 분석하여 피해의 징후인지를 분석해야 함<sup>13)</sup>
  - 임직원 급여의 동결이나 승진의 유보를 보여주는 지표 등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성장(growth)의 방해는 시장점유율, 설비가동률 및 생산량 등 앞서 검토한 피해판정요소들의 감소 여부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뒤 이들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재판단함
  - 단 다른 피해판정요소들의 분석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다시 성장이라는 별도 항목에서 해당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ability to raise capital or investments)의 하락은 부채비율의 증가, 유상증자의 실패, 주가 하락, 유동성 자산 감소, 적용이자율 상승 및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들의 악화는 피해의 유의한 지표임

---

13) 임금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타 요소의 압박으로 인해 고용이나 임금수준이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고용지표와 더불어 후행 지표의 성격이 강함

### Ⅲ.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사례 분석

-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을 통해 확인된 반덤핑규제 상위품목에 대하여,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의 법적 근거와 반덤핑 피해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실질적 피해’의 주요 판정요인을 살펴봄
  - 주요국은 세계적으로 반덤핑규제를 활발히 사용하는 국가 중 권역별로 구분하여 미국, EU, 중국 및 호주로 선정함<sup>14)</sup>

#### 1. 미국

##### 가. 반덤핑조치 현황<sup>15)</sup>

- 미국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조사개시 기준 반덤핑조치 건수는 총 140건이며 이 중 중국이 28건으로 1위, 우리나라가 16건으로 2위, 인도가 9건으로 3위를 차지함
  - WTO 통계 기간<sup>16)</sup> 동안 미국의 대(對)세계 반덤핑규제 건수는 조사개시 기준으로 총 352건이며 중국이 총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가 25건으로 2위, 인도와 대만이 각 23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이 19건으로 5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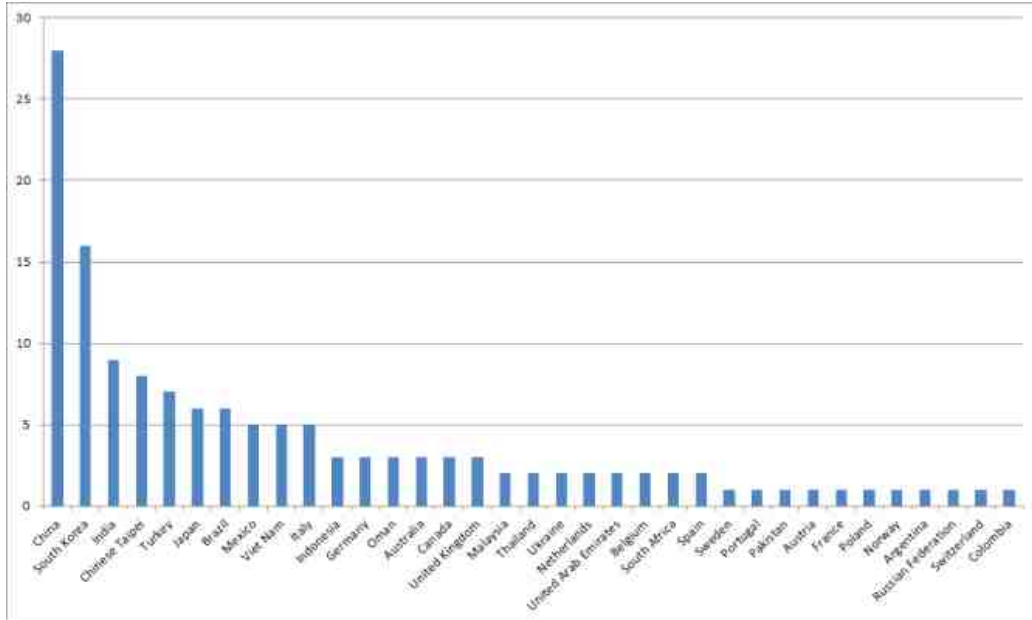
14) 주요국의 수입상위품목을 조사한 뒤 이를 반덤핑규제 상위품목과 교차검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상위 수입품목현황은 제외함

15) WTO 통계, <http://i-tip.wto.org/goods/Forms/TableViewDetails.aspx?mode=modify>(검색일자: 2018.5.14.)

16) 미국의 WTO 통계기간은 197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국의 대(對)세계에 대한 반덤핑 규제 대상국은 WTO 회원국에 한정함

[그림 Ⅲ-1] 최근 5년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국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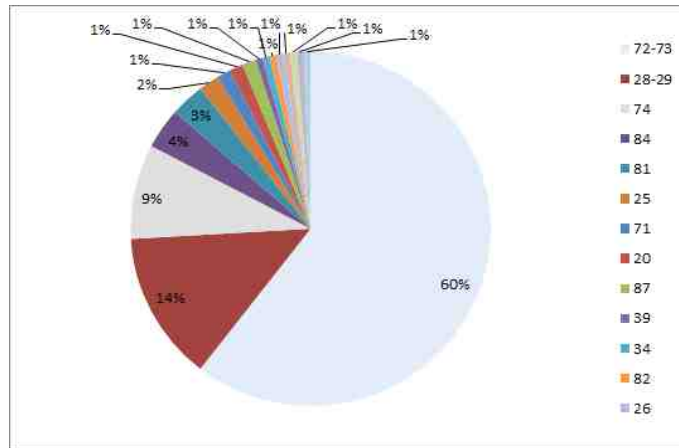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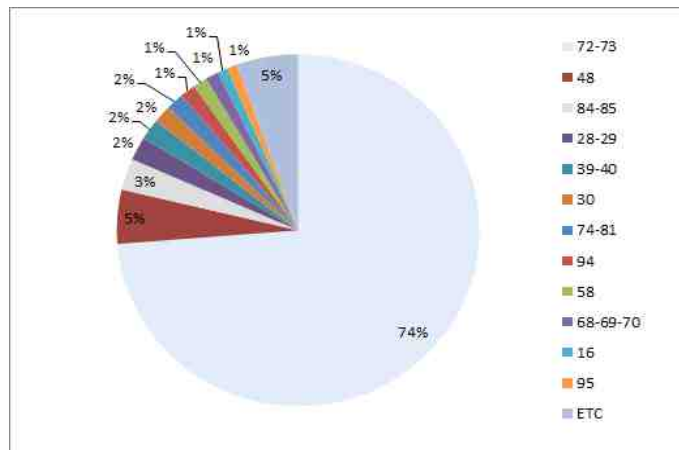
- WTO 통계에 따라 1977년부터 1994년 WTO 출범 전까지 미국의 반덤핑규제 품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HS 72~73류)이 60%를 차지함
  - 화학제품(HS 28~29류)이 14%로 2위, 알루미늄 정광과 그 제품(HS 74류)이 9%로 3위임
  
- 1995년 WTO 출범 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반덤핑규제 품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HS 72~73류)이 74%로 여전히 규제대상 1위임
  - WTO 출범 전 화학제품(HS 28~29류)의 반덤핑 규제 횟수가 14%에서 5%로 확연히 줄어들음

[그림 III-2] 1977~1994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단위: %)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3] 1995~2012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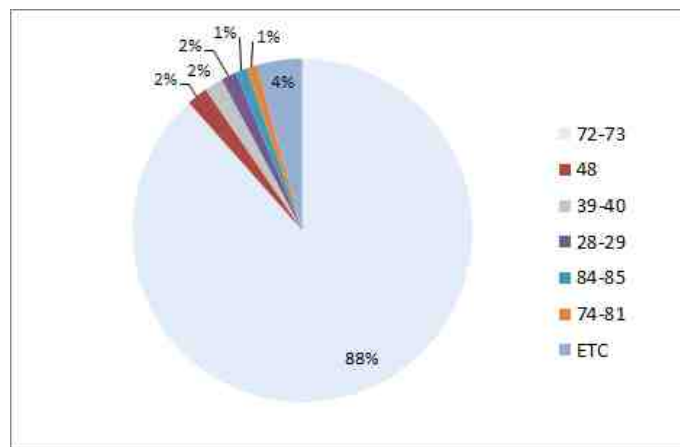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미국의 반덤핑규제 품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HS 72~73류)의 반덤핑

규제가 88%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음

- 화학제품(HS 28~29류) 대신 종이와 그 제품(HS 48류) 또는 플라스틱과 고무(HS 39~40류)의 규제가 증가했음

[그림 Ⅲ-4] 최근 5년간 미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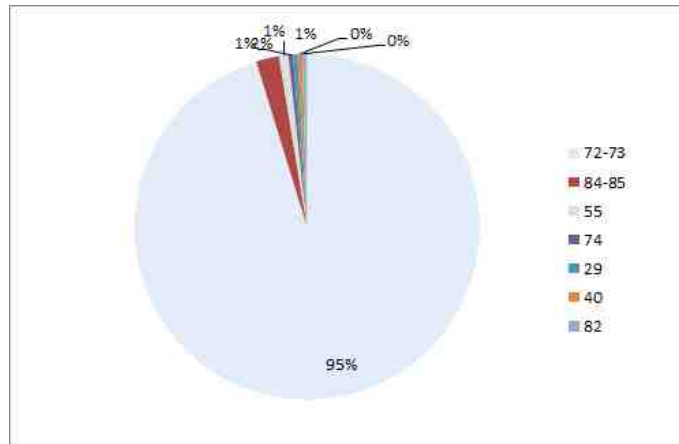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미국은 WTO 통계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총 25건의 반덤핑규제를 진행하였으며 철강제품(HS 72~73류)에 95%의 반덤핑규제를 조치함<sup>17)</sup>
  - 기계·전자기기(HS 84~85류)와 인조섬유(HS 55류)에 각 1%의 반덤핑규제를 조치함
- 이하에서는 미국이 반덤핑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철강제품(HS 72~73류)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질적 피해'의 법적 근거와 미국 기업이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의 요인을 살펴봄

17) 이 중 5건은 조사 중이며 반덤핑관세 부과통지 전임

[그림 III-5] 미국의 대(對)우리나라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단위: %)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전(U.S Code, U.S.C)과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서 규정함
  - 연방법전(U.S.C)의 제19편 관세(Title 19 Customs Duties)의 제4장인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의 제4절(Subtitle)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에서 규정함
  - 연방규정집(C.F.R)은 연방법전의 보완을 위한 하위규정으로 관세와 통관 사항에 대해 보다 행정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함

〈표 Ⅲ-1〉 미국 반덤핑제도 관련 법적 근거

U.S.C	Title(편)	수록법령		
	19	관세(Customs Duties)		
	Chapter(장)	수록법령(조항)		
	4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1202~1683g)		
	Subtitle(절)	Part(관)	조항의 구성	주요 내용
제Ⅳ절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제1관	§§ 1671~1671h	상계관세의 부과	
	제2관	§§ 1673~1673i	반덤핑관세의 부과	
	제3관	§§ 1675~1676a	산업피해구제(재심사와 양적제한)	
	제4관	§§ 1677~1677n	산업구제 관련 기타 일반사항	
C.F.R	Title No	수록법령		
	19	관세(Customs Duties)		
	Chapter(장)	Part(조항)	조항의 구성	주요 내용
	제Ⅲ장 국제무역위원회 와 상무부	제351조	§§ 351.101~351.702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354조	§§ 354.1~354.19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행정보호명령(APO)위반 시 제재

자료: LII, <https://www.law.cornell.edu>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8. 6. 26)

- 미국이 수입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가격의 존재와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함<sup>18)</sup>
-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가 수입물품이 공정가격(fair value)보다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외국 상품의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less than fair value, LTFV)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8) LII, <https://www.law.cornell.edu>(검색일자: 2018.6.26.), 19 U.S.C. § 1673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 실질적 피해란 “증대하지 않거나(inconsequential), 실질적이 아니거나(immaterial), 중요하지 않은(unimportant) 것이 아닌 손해(harm)”를 의미함<sup>19)</sup>
- 무역위원회(ITC)는 실질적 피해의 판정과 관련하여 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②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미국 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③ 그러한 물품의 수입이 국내 동종물품 생산자의 미국 내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sup>20)</sup>
- 실질적 피해 여부에 관한 판정을 위해 경제적 요인(피해판정요소)<sup>21)</sup>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관련 요소는 실질적 피해를 받는 산업 특유의 사업주기와 경쟁 조건이 포함됨<sup>22)</sup>
  - 수입물량 평가 시 대상 수입의 물량 또는 그 물량 증가분이 미국 내 생산 또는 소비 대비 절대적 또는 상대적 측면에서 상당한지(significant)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수입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시 ①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국 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significant) 저가인지 여부 ② 그러한 수입의 영향으로 다른 식으로 상당한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인상이 억제된 경우를 검토해야 함
  -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 시 미국 내 산업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된 경제적 요소들을 평가해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출하,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및 가동률의 감소

19) 19 U.S.C. § 1677(7)(A) 「Definitions; special rules-In general」

20) 19 U.S.C. § 1677(7)(B) 「Definitions; special rules- Volume and consequent impact」

21) 19 U.S.C. § 1677(7)(C)(iii) 「Definitions; special rules- Evaluation of relevant factors」; 진성백, 「최근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재심시 산업피해 여부 주요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2016.5, pp.14~15

22) 19 U.S.C. § 1677(7)(C)(iii). This provision was amended by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Pub. L. 114-27.

- 내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및 투자에의 악영향
- 국내 동종물품의 파생제품이나 더 발전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국내산업의 기존 개발 및 생산 노력에의 악영향
- 반덤핑조사 시 덤핑마진의 정도

- 덤핑과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 무역위원회는 덤핑 이외의 요인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다양한 입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를 야기하는 덤핑효과 이외의 요인들로 인한 피해를 덤핑 수입으로 귀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sup>23)</sup>
    - 덤핑 이외의 경제적 요인은 덤핑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기술, 수요나 소비자 취향의 변화, 그리고 국내 생산자 간의 경쟁 및 국내 생산자에 의한 경영방침 등이 있음
  - 또한 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음
    -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합리적으로 발생했다면(can reasonably be attributed to the subject imports), 상대방은 위원회에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특정 공식의 엄격한 준수의 필요성을 부인했음<sup>24)</sup>
-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덤핑 수입으로 인한(by reason of the LTFV imports)'기준에 의거한 이 평가는 덤핑 수입과 실질적 피해 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장해야 함<sup>25)</sup>

23) ITC, "Ferrovanadium from Korea Investigation," No.731-TA-1315(Final), 2017.5, pp.8~9

24) ITC(2017. 5.), p.9

25) ITC(2017. 5.), p.8

- 미국 연방법원은 “덤핑 효과가 실질적 피해에 부수적이거나 접하기 쉽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외국 제품과 실질적 피해는 인과관계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함<sup>26)</sup>

##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1) 페로바나듐(Ferrovandium, HS 7202.92)<sup>27)</sup>

#### 가) 개요

- 미국 내 페로바나듐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한국산의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과 가격이 하락하고 재무성과가 악화되어 일부 미국 내 기업은 파산 후 다른 국가에 매각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 덤핑물품의 수입증가는 페로바나듐의 현물공시가격지표인 CRU Ryan의 Note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페로바나듐 가격이 낮아진 주요 원인이 됨
  - 페로바나듐의 가장 큰 공급업체인 미국 기업 중 하나는 덤핑물품의 수입증가와 동종물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 신청 후 다른 국가로 매각이 됨

#### 나) 상세내용

- 페로바나듐의 수요는 철강산업의 수요에 의존하는데,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이하 조사기간) 철강 생산량이 1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로바나듐의 미국 내 수요량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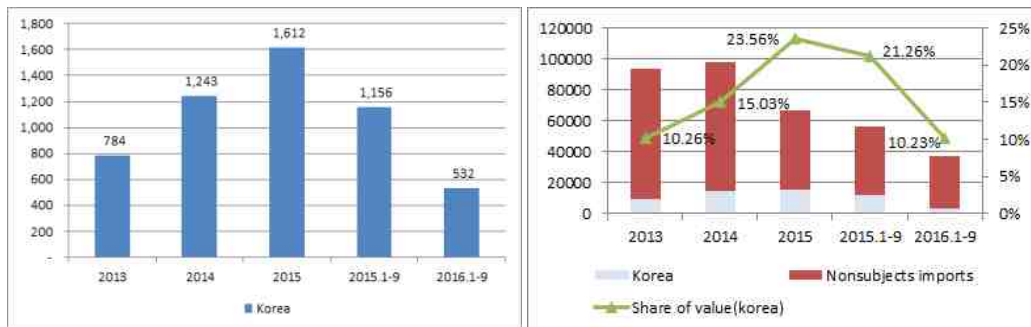
26) 상계서, 원자료: Nippon Steel Corp. v. United States, 458 F.3d 1345, 1357 (Fed. Cir.2006); Taiwan Semiconductor Industry Ass'n v. USITC, 266 F.3d 1339, 1345 (Fed. Cir. 2001)

27) ITC(2017.5)

- 2013년 대비 2015년의 페로바나듐의 수요량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대비 판매금액은 감소함
  - 미국은 타국에 비해 통상 높은 비율의 페로바나듐을 철강산업에 소비하므로 타국에 비해 수요가 높은 편임
- 미국 내 페로바나듐 수요에 대해 조사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수요는 감소했으나, 한국의 페로바나듐(이하 덤핑물품)의 수입량, 수입금액 및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동종물품의 수요는 2013~2014년 동안 증가했다가, 2014~2015년 동안 감소함
  - 덤핑물품의 수입량, 수입금액 및 수입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함
    -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조사기간 각각 78만 4천파운드, 120만파운드, 160만파운드로, 2015년 수입량은 2013년 대비 약 105.6% 증가함
    - 덤핑물품의 수입금액은 조사기간 각각 959만달러, 1,471만달러, 1,563만달러로 2015년 수입금액은 2013년 대비 약 62.9 % 증가함
    - 페로바나듐 수입시장에서 덤핑물품의 점유율은 조사기간 각각 10.3%, 15%, 23.6%로 점점 증가한 반면, 비덤핑물품의 점유율은 89.7%, 85%, 76.4%로 소폭 감소함

[그림 III-6]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시장 비중 추이

(단위: 천파운드, 천달러, %)



자료: ITC, 「Ferrovanadium from Korea」, 2017.1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페로바나듐의 가격은 전통적으로 CRU Ryan의 Notes의 공시가격에 의존하는데,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는 공시가격을 더욱 낮추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동종물품의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줌
  - 미국에서 대부분의 페로바나듐 판매는 매주 2회 광물 등 현물시장의 가격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뒤 공시하는 CRU Ryan의 Notes를 관례적으로 참고하여 연간 또는 장기 계약을 맺으므로, 현물공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침
  - 동종물품의 수요가 감소한 2014~2015년 및 동 기간 덤핑물품의 수입 증가는 CRU Ryan의 Notes 등이 발표한 시장가격을 하락시킴
    - Ryan의 Notes가 발표한 가격에 따르면 2016년 9월 페로바나듐의 가격은 2013년 1월보다 28.1% 하락하였는데, 2013년에서 2015년 동안 약 55.7% 하락했으며,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약 89.8% 상승했고 2016년 말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7% 상승함
    - 미국 청원자(petitioners)들은 페로바나듐에 대한 공시가격이 2015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조정되었고 2015년 12월의 평균가격은 2014년 같은 달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고 보고함
  - 이에 따라 국내산업은 동종물품의 가격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받았음
    - 최종 조사단계에서 응답한 8개의 기업 중 2개사는 가격을 인하했으며 2개사는 가격 인상 발표를 취소하였고 2개사는 판매가 감소했다고 진술함
- 조사기간 동안 국내산업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인 Bear를 소유한 Gulf사는 생산 감소로 인해 Bear의 파산 신청 후 이를 매각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 Gulf사는 2016년 6월 Bear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후 2016년 10월 터키 철강 기업인 Yilmaden holding A.S에 이를 매각함
    - Bear는 철강 시장의 수요 감소와 페로바나듐 가격 하락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함
  - 9개의 기업 중 5개사는 2013년부터 페로바나듐 생산과 관련한 운영 및 조직 특성에 대한 변화로서 파업, 장기간 가동 중단, 사업 인수·합병·폐쇄, 노동계약

수정 및 기타 생산축소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함

- 2013~2014년 동안 동종물품의 수요가 증가한 후 2015년은 덤핑 수입의 증가로 동종물품의 가격이 하락했으므로 국내산업의 경제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증감이 혼합된 형태임
  - 평균생산능력, 생산량, 설비가동률, 미국산 물품의 출하량(shipment),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과 투자이익 등은 2013~2014년 동안 증가했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5년의 매출총이익은 2013년의 수준 이하로 떨어짐
  - 매출원가는 2013~2014년 동안 매출액보다 증가가 둔화했으나 2015년 매출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매년 일정률 증가함
  - 출하량 대비 재고량은 2013~2014년 동안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증가함
  - 고용, 임금 및 생산성은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18년 현재 미국은 덤핑물품을 <표 III-2>와 같이 3.22%와 54.69%의 덤핑관세율을 각 덤핑 대상업체에 부과 중임

<표 III-2> 미국의 덤핑물품(페로바나듐) 규제 경과 내용

(단위: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반덤핑 조사개시	2016.4.19		덤핑마진 20.25~54.69% 주장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6.05.11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판정
DOC 반덤핑 예비판정	2016.10.26	- Korvan: 4.48 - Fortune: 54.69 - Woojin: 54.69 - 기타: 4.48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DOC 반덤핑 최종판정	2017.03.17	- Korvan: 3.22 - Fortune: 54.69 - Woojin: 54.69 - 기타: 3.22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7.05.08		산업피해 긍정판정
DOC 반덤핑 관세부과		- Korvan: 3.22 - Fortune: 54.69 - Woojin: 54.69 - 기타: 3.22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8>  
(검색일자: 2018.7.26.)

## 2) 송유관(Welded Line Pipe, HS 7305.11, 12, 19, 7306.19)<sup>28)</sup>

### 가) 개요

- 덤프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해당 물품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이는 동종물품의 가격 및 생산의 증가를 매우 억제시킴
  - 2012~2013년 조사기간 초반, 국내산업은 미국 시장의 송유관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덤프물품과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 손실을 어느 정도 완화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덤프물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재무 실적이 악화됨
    - 덤프물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는 당초 송유관 수요 감소로 하락한 국내산업의 판매수익에서 추가적인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산업의 생산, 매출, 매출이익 및 고용 등이 심각하게 저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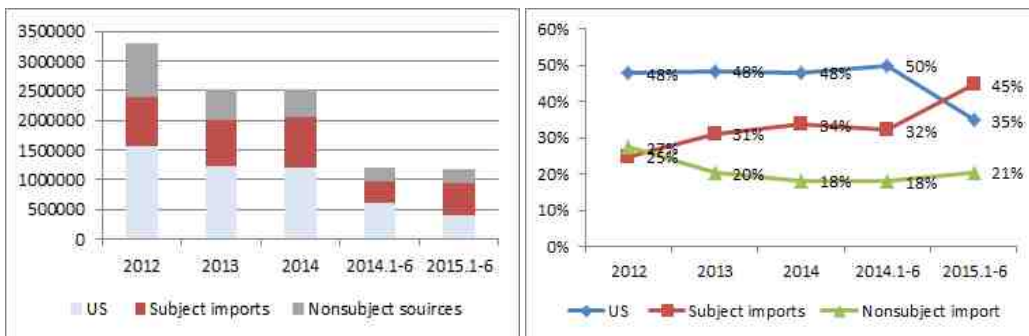
28) ITC, 「Welded Line Pipe from Korea and Turkey-Investigation Nos. 701-TA-525 and 731-TA-1260-1261 (Final)」, 2015.11

나) 상세내용

-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이하 조사기간) 미국 내 특정 송유관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한국과 터키의 특정 송유관(이하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 또한 증가함
  - 미국 시장 내 특정 송유관의 총수요량은 조사기간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157만톤, 122만톤, 121만톤이며, 2015년 상반기는 41만 4천톤으로 2014년 같은 기간 59만 8천톤보다 30.7% 감소함
  - 미국산 시장점유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덤핑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미국산 시장점유율을 앞섬
    - 미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까지 약 50%를 유지하다가, 2015년 1~6월 35%로 급격히 하락함
    -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조사기간 각각 24.8%, 31.2%, 33.7% 및 2014년 1~6월 32.2%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 1~6월 44.6%를 차지하며 미국산 시장점유율과 전세가 역전됨
    - 비덤핑대상 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조사기간 각각 27.4%, 20.3%로, 18.2% 및 2014년 1~6월 18%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6월 20.5%로 소폭 증가함

[그림 III-7] 덤핑 및 국내 동종물품의 미국 전체수요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톤, %)



자료: ITC(2015. 1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해당 송유관의 수요는 에너지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현물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의 수요는 감소함
  - 송유관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집하고 송전에서 배전으로 압력을 가해 해당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와 연관된 에너지 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받음
    -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낮은 가격, 석유와 천연가스의 채굴 또는 시추 건수, 송유관라인의 신설과 수리 건수 등이 있음
    - 청원인(petitioners)에 따르면 송유관라인 교체, 석탄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로의 전환 및 시추 효율, 그리고 유가의 매우 높은 가격<sup>29)</sup> 등이 있음
  - 원유(crude oil)와 천연가스의 현물가격은 조사기간 중 2014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5년 가격은 2013년과 2014년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함<sup>30)</sup>
  - 원유(crude oil)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함<sup>31)</sup>
  - 석유(oil)와 천연가스의 채굴 또는 시추 건수는 조사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다가 2015년 초부터 급격히 감소함<sup>32)</sup>
  
- 2014년부터 미국 내 용접라인 송유관 수요의 감소는 덤핑물품의 수입량도 감소시켰지만, 총수입물량 대비 덤핑물품 수입량 비중과 미국 생산량 대비 덤핑물량 수입량 비중은 조사기간 동안 점점 증가함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함
    -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조사기간 각각 81만 5,007톤, 78만 8,827톤, 85만 1,997톤, 2014년 상반기 38만 5,675톤과 2015년 상반기가 53만 335톤이며,

29) 유가가 매우 높을 때 석유의 이동은 트럭과 철도 운송보다 송유관라인을 건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석유를 옮길 수 있음

30) 국내 원유가격은 2012년 배럴당 100달러에서 2014년 중반까지 약 20달러 범위에서 변동되다가 2015년 1월에 배럴당 47달러로 크게 하락하였고, 천연가스 가격은 2012년 100만 비티유(btu) 당 2.67달러에서 2014년 2월에 6달러로 급격히 증가하고 2015년 4월 2.61달러로 급격히 하락함

31)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원유 생산량은 52%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1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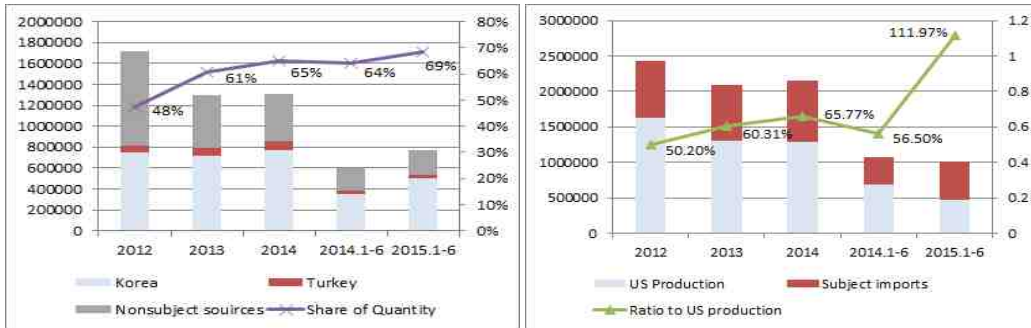
32) 석유 시추 건수는 2012년 1월 1,191건에서 2014년 후반에 1,600건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6월 628건으로 감소하였고, 가스 시추 건수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11건에서 228건으로 감소함

수입량의 비중은 각각 48%, 61%, 65%, 64% 및 69%로 점점 증가함

- 덤핑 수입량의 국내 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2015년 상반기 기준 112%로 크게 증가함
  - 조사기간 각각 50.2%, 60.3%, 65.8%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56.5%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 상반기에 112.0%로 급격히 증가함

[그림 Ⅲ-8]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시장 비중 추이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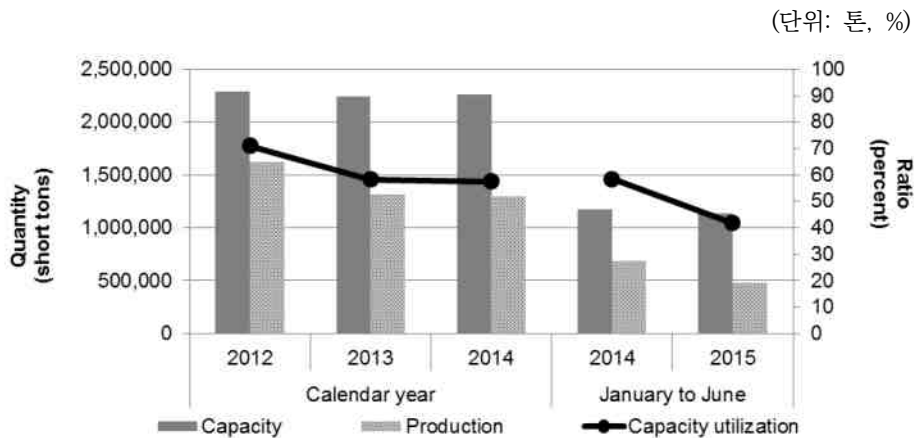


자료: ITC, 「Certain Welded line Pipe from Korea and Turkey」, 2015.1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에 상당한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함
  -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국내 수요와 원가의 감소가 내수가격의 하락에 기여했을 수 있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은 낮은 가격의 덤핑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급격히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음
    - 동종물품의 가격은 2013년과 2014년 초반에 걸쳐 평준화되었고, 2014년 말과 2015년 상반기에 다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열간 압연 강재 등 국내산업의 송유관 평균 원가율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6.2%가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더욱 낮아짐

- 조사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생산량과 설비동률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함
  - 생산능력은 조사기간 동안 220만톤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12년 대비 2014년 약 1.5%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9% 감소함
  - 생산량은 조사기간 각각 162만톤, 130만톤, 129만톤, 68만 2천톤 및 47만 3천톤으로 2012년 대비 2014년 약 20.2% 감소했고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0.6% 감소함
  - 설비동률은 조사기간 각각 70.9%, 58.3%, 57.4%로 2012년 대비 2014년 기준 약 29.2%가 감소했으며, 2014년 1~6월의 58.3%에 비해 2015년 같은 기간에는 41.7%로 약 16.6% 감소함

[그림 III-9] 동종물품의 생산능력·생산량·설비동률 추이



자료: ITC, 「Certain Welded line Pipe from Korea and Turkey」, 2015.11, p. III-6

- 국내산업의 고용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함
  - 조사기간 동안 전체 고용 수는 각각 2,319명, 2,010명, 2,0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5년 상반기는 1,629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의 2,160명에 비해

약 24.5% 감소함

- 조사기간 동안 총임금은 각각 1억 3천만달러, 1억 900만달러, 1억 300만달러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5년 상반기는 4,200만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의 5,700만달러에 비해 약 27% 감소함
- 천시간당 톤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조사기간 각각 333.1톤, 329.4톤, 327.4톤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5년 상반기는 294.8톤으로 2014년 같은 기간의 320.2톤에 비해 약 7.9% 감소함

〈표 III-3〉 동종물품의 고용·임금·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명, 천달러, 톤/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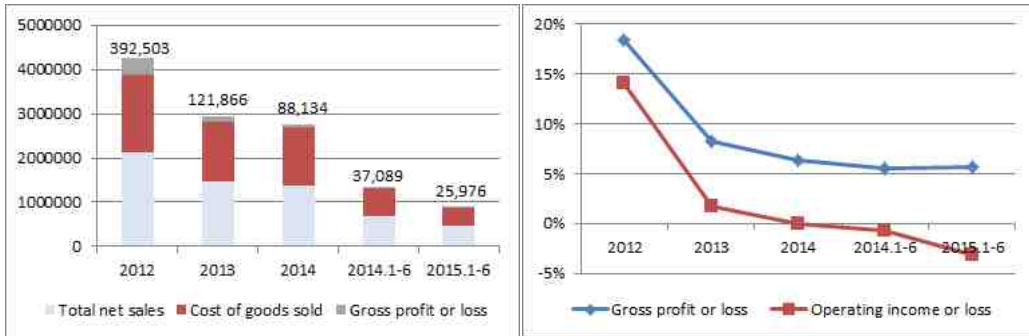
Item	Calendar year			January to June	
	2012	2013	2014	2014	2015
Production and related workers(PRWs) number	2,319	2,010	2,038	2,160	1,629
Wages paid(\$1,000)	130,108	109,673	103,839	57,723	42,115
Productivity(short tons per 1,000hour)	333.1	329.4	327.4	320.2	294.8

자료: ITC, 「Certain Welded line Pipe from Korea and Turkey」, 2015.11, p.III-10

- 국내산업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지표는 조사기간 동안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
  - 2014년 매출액은 2012년 대비 약 35% 감소하였고, 2015년 상반기는 4억 5,300만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의 6억 7,400만달러보다 약 32.6% 감소함
  - 2014년 매출원가는 2012년 대비 약 25.4% 감소하였고, 2015년 상반기는 4억 2,700만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의 6억 3,700만달러보다 약 32.8% 감소함
  - 매출총이익률은 조사기간 각각 18.4%, 8.3%, 6.4%, 5.5% 및 5.7%이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14.%, 1.8%, 0.02%, 0.8% 및 -3.2%로 급격히 하락함

[그림 III-10] 동종물품의 매출 등과 이익률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ITC, 「Certain Welded line Pipe from Korea and Turkey」, 2015.1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2018년 현재 미국은 덤핑물품을 <표 III-3>와 같이 2.53%에서 6.19% 사이의 덤핑관세율을 각 덤핑 대상업체에 부과 중임

<표 III-4> 미국의 덤핑물품(송유관) 규제 경과 내용

(단위: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반덤핑 조사개시	2014.11.05	-	-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4.11.26	-	산업피해 긍정판정
DOC 상계관세 예비판정	2015.03.17	-	상계관세 미소마진 판정
DOC 반덤핑 예비판정	2015.05.14	- 현대하이스코: 2.52 - 세아제강: 2.67 - 기타: 2.6	-
DOC 최종판정	2015.10.05	- 현대하이스코: 6.19 - 세아제강: 2.53 - 기타: 4.36	상계관세 미소마진 판정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5.11.06	- 현대하이스코: 6.19 - 세아제강: 2.53 - 기타: 4.36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DOC 연례재심 예비판정	2018.01.02	- 현대하이스코: 19.42 - 세아제강: 2.3 - 기타: 10.86	2015~2016 연례재심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8>  
(검색일자: 2018.7.26.)

### 3) 강철못(Steel Nails HS 7317, 8206)<sup>33)</sup>

#### 가) 개요

- 미국 내에서 강철못의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과 단가가 하락하였고 고용이 크게 감소됨
  -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덤핑 수입의 급증으로 단가하락이 발생하여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감소함
  - 아랍에미리트의 반덤핑 관세 부과와 비덤핑물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있었으나 덤핑 수입의 급증으로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함
  - 조사기간 동안 미국 생산자 2명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국내산업의 재무성과는 정체되었으며 노동자 수는 감소했음

#### 나) 상세내용

-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하 조사기간) 주택 신규착공 건수의 증가로 강철못의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함<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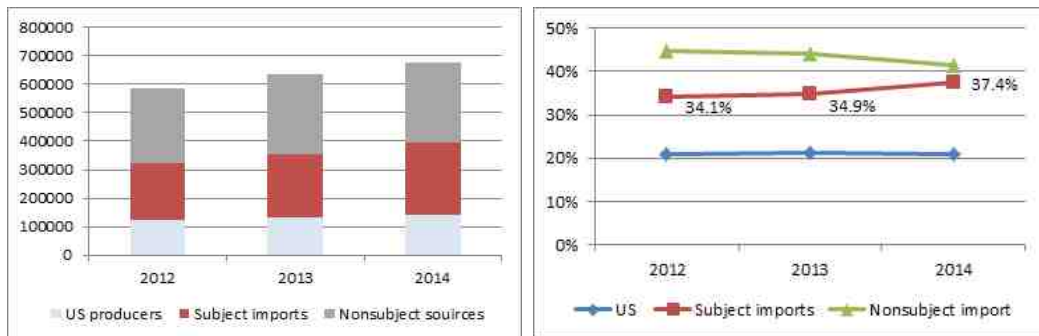
33)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Investigation Nos. 701-TA-521 and 731-TA-1252-1255 and1257 (Final)」, 2015.7

34) 강철못의 수요는 주거용 건축 산업과 팔레트 제조 산업 등의 수요에 의존하는데, 조사기간 동안 주택의 신규 착공은 2012년 1월 72만 가구에서 2014년 12월 10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함

- 강철못의 국내시장 총수요는 조사기간 각각 58만 4천톤, 63만 3천톤, 67만 4천톤이며, 2014년은 2012년 대비 약 15.3% 증가함
- 조사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과 비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한국,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및 베트남산 수입물품(이하 덤핑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국내 동종물품과 비덤핑국가의 수입량은 조사기간 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임
    - 미국 동종물품은 각각 12만톤, 13만톤, 14만톤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시장 점유율은 약 21%를 유지하였음
    - 비덤핑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46만톤, 50만톤, 53만톤으로 증가 추세이나, 시장점유율은 44.9%, 44.1% 및 41.6%로 하락 추세임<sup>35)</sup>
  - 덤핑물품은 조사기간 각각 20만톤, 22만톤, 25만톤으로 지속적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도 34.1%, 34.9% 및 37.4%로 증가하여, 2014년 수입량은 2012년 대비 약 26.7% 증가함

[그림 III-11] 덤핑 및 국내 동종물품의 미국 전체수요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톤)



자료: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 2015.7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35) 중국은 2008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시장에 남아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2012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후 미국 시장점유율이 8%, 5.5% 및 0.2%로 급속히 감소함

- 덤핑물품은 동종물품가격과 비교하여 저가 판매 경험이 고가 판매 경험보다 더 많았음
- 조사기간 동안 총 403건 중 219건에 대해 12.1%의 저가 판매로 인한 평균 마진율을 남겼고, 184건에 대해 17.8%의 마이너스 평균 마진율을 남김
- 또한 저가판매량은 7,859톤으로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 대비 약 93%를 저가로 판매함

〈표 III-5〉 동종물품과 비교한 덤핑물품의 저가와 고가판매 경험

(단위: 건수, %, 천개, 톤)

	Number	1,000 nails
	Average margin	Short tons
underselling	219	14,211,150
	12.1	7,859
overselling	184	1,706,297
	-17.8	563

자료: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 2015.7, p.V-8~9

- 덤핑물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가격 인상이 심각하게 억제되었는데, 조사기간 동안 미국 생산자 12명 중 5명은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10명 중 5명은 가격 인상 발표를 취소했다고 보고함<sup>36)</sup>
- 무역위원회(ITC)는 조사기간 동안 비덤핑물품은 시장점유율을 잃었고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밝힘
- 덤핑국가의 조사대상자들은 미국 생산자들이 자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덤핑국가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므로, 비덤핑국가물품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산업의 성과를 저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

36) 청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총 12개의 동종물품 중 11개의 가격은 2012년보다 낮게 책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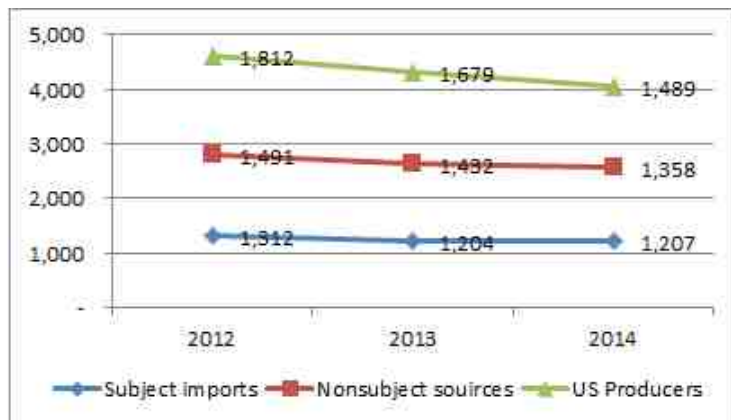
는 그러한 이유가 있더라도 비덤핑국가의 높은 수입가격은 국내 물품가격의 하락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덤핑과 실질적 피해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답함

- 강철못의 원재료인 선재(wire rod) 가격 하락이 강철못의 전반적인 내수시장가격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대만의 의견에 대해 무역위원회(ITC)는 강철못의 국내가격과 선재가격의 추세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양자 간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답함

- 오히려 동종물품의 좋은 대용품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수입되는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임

[그림 III-12] 강철못의 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 2015.7, IV-5, VI-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강철못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이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설비가동률의 증가폭은 낮았으며 생산직 근로자 수도 크게 감소함
  - 국내산업 생산 능력은 2012년 32만톤에서 2014년 34만톤으로 증가했으나 설비가동률은 2012년 39%에서 2014년 41.6%로 소폭 증가했음
  - 생산량 증가에 반해 총 작업시간의 감소로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생산직 근로자 수는 2012년 927명에서 2014년 746명으로 약 19.5% 감소함

- 국내산업의 청원자(petitioner)인 Mid Continent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판정 후 국내 수요의 증가를 예상하여 강철못 사업의 확장 등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확장 결정을 번복했고, 이는 국내 생산직 근로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힘

〈표 III-6〉 동종물품의 평균 생산능력 등 추이

Items	2012	2013	2014
Capacity(short tons)	328,414	326,761	343,108
Production(short tons)	128,085	133,902	142,840
Capacity utilization(rate)	39.0	41.0	41.6
Production-related workers(number)	927	885	746
Total hours worked(1,000 hours)	1,470	1,465	1,427
Productivity(short tons per 1,000 hours)	87.1	91.4	100.1

자료: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 2015.7, III-3, III-10

- 국내산업의 재무 상태는 2012~2013년 동안 개선되었다가 2013~2014년 동안 악화됨
  - 조사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톤당 판매량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약 15.7%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4.9% 감소함
  - 매출총이익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약 15.2% 감소했으며 매출원가는 2.3% 감소했는데 매출총이익의 하락이 매출원가 하락보다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표 III-7〉 동종물품의 재무성과 추이

Items	2012	2013	2014
Total net sales(short tons)	124,133	134,927	143,636
Total net sales(\$1,000)	224,901	226,513	213,896
Cost of goods sold(\$1,000)	180,857	180,112	176,559
Gross profit(\$1,000)	44,044	46,401	37,337
SG&A expense(\$1,000)	40,689	37,844	30,630
Operating income(\$1,000)	3,355	8,557	6,707
COGS-Raw materials(%)	54.2	52.2	54.5
Gross profit(%)	19.6	20.5	17.5
Operating income(%)	1.5	3.8	3.1

자료: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 2015.7, VI-2

- 2018년 현재 미국은 덤핑물품을 〈표 III-7〉와 같이 2.76%의 덤핑관세율을 덤핑 대상업체에게 부과 증임

〈표 III-8〉 미국의 덤핑물품(강철못) 규제 경과 내용

(단위: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반덤핑 조사개시	2014.06.19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4.07.11		산업피해 긍정판정
DOC 상계관세 예비판정	2014.10.27		미소마진 판정(0.15~0.018)
DOC 반덤핑 예비판정	2014.12.29	- 대진철강: 12.38 - 진흥철강: 2.13 - 듀오패스트: 7.26 - 진스코: 7.26 - 기타: 7.26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DOC 최종판정	2015.05.14	- 대진철강: 11.8 - 진흥철강: 0 - 듀오패스트: 0 - 진스코: 0 - 기타: 11.8	상계관세 미소마진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5.07.06	-	산업피해 긍정판정
DOC 연례재심 예비판정	2017.08.07	- 대진철강: 2.14 - 코와이어: 0 - 제일선재: 2.14	-
DOC 연례재심 최종판정	2018.01.29	- 대진철강: 2.76 - 코와이어: 0 - 제일선재: 2.76	-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8>(검색일자: 2018.7.26.)

## 2. 중국

### 가. 반덤핑조치 현황<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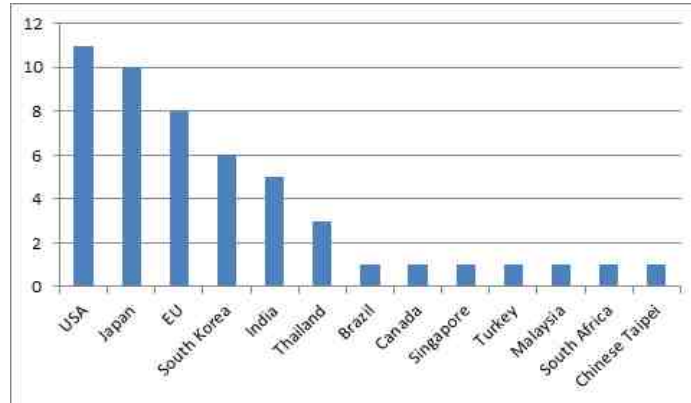
- 중국의 최근 5년간 조사개시 기준 반덤핑조치 건수는 총 50건이며 이 중 미국이 11건으로 1위, 일본이 10건으로 2위, EU가 8건으로 3위, 우리나라가 6건으로 4위를 차지함
- WTO 통계 기간<sup>38)</sup> 동안 중국의 대(對)세계 반덤핑규제 건수는 총 105건이며, 미국이 총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0건, EU가 17건, 우리나라가 13건, 그리고 대만이 9건 순임

37) WTO 통계, <http://i-tip.wto.org/goods/Forms/TableViewDetails.aspx?mode=modify>(검색일자: 2018.5.14.)

38) 중국의 WTO 통계기간은 2002년 3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은 WTO 회원국에 한정함

[그림 III-13] 최근 5년간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상국별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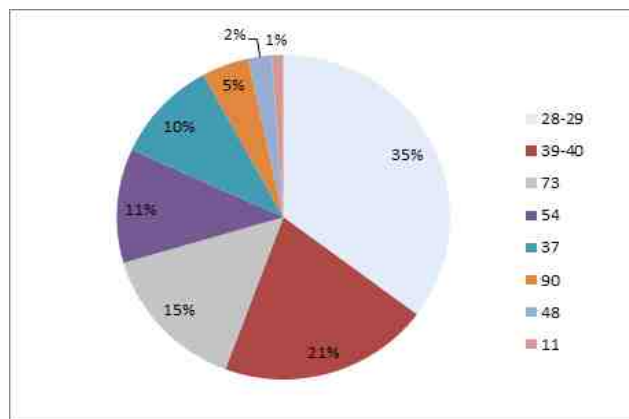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WTO 통계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반덤핑규제 품목을 살펴보면, 무기·유기 화학제품(HS 28~29류)이 35%, 플라스틱과 고무(HS 39, 40류)가 21%, 그리고 철강제품(HS 73류)가 15%를 차지함
- 인조섬유(HS 54류)가 11%로 4위, 사진과 영화용 재료(HS 37류)가 10%로 5위임
- 광학기기(HS 90류), 펄프(HS 48류), 밀가루와 곡분(HS 11류) 순임

[그림 III-14] 2002~2012년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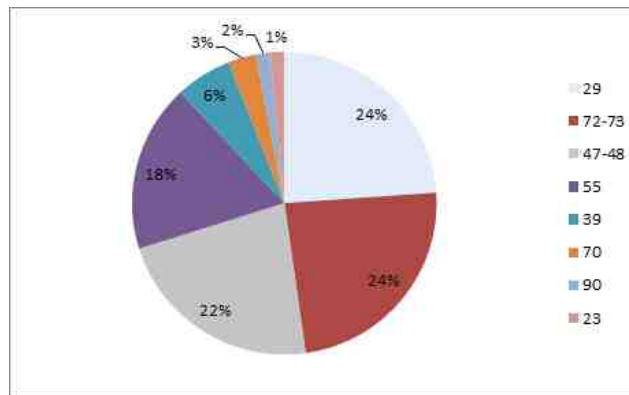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최근 5년(2013~2017년)의 중국의 반덤핑규제 품목을 살펴보면, 유기 화학제품(HS 29류)의 반덤핑 규제가 24%로 이전보다 9% 줄어들었고, 철강과 그 제품(HS 72~73류)이 22%로 이전보다 7% 늘어남
- 펄프와 종이(HS 48~49류)가 22%로 이전보다 20% 늘어나 동 물품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 인조섬유(HS 55류)가 18%, 플라스틱(HS 39류)이 6%, 유리와 그 제품(HS 70류)이 3%, 광학기기(HS 90류)가 2%, 그리고 사료(HS 23류)가 1% 순임

[그림 III-15] 최근 5년간 중국의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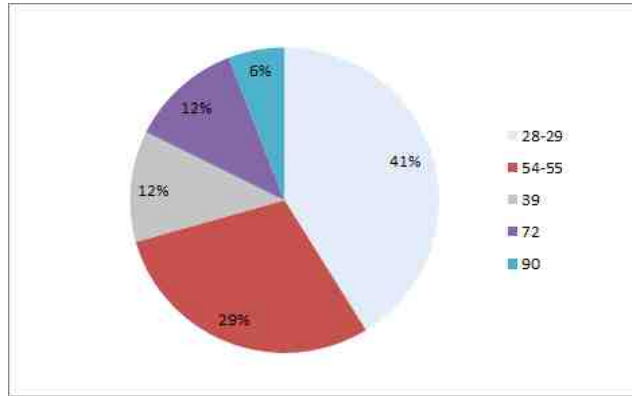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 통계기간에 총 13건을 진행하였으며 무기·유기 화학제품(HS 28~29류)에 41%의 반덤핑규제를 조치했음<sup>39)</sup>
- 인조섬유(HS 54~55류)에 29%, 플라스틱 제품(HS 39류)에 12%, 철강(HS 72류)에 12%, 그리고 광학기기(HS 90류)에 6%의 규제를 조치함

39) 이 중 3건은 조사 중이며 반덤핑관세 부과 전임

[그림 III-16] 중국의 대(對)우리나라 반덤핑규제 대상품목과 비중  
(단위: %)



자료: WTO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하에서는 중국이 반덤핑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무기·유기 화학제품(HS 28~29 류)을 중심으로 중국의 '실질적 피해'의 법적 근거와 중국 기업이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의 요인을 살펴봄

####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sup>40)</sup>

-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 그리고 반덤핑제도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20여 개의 부문규장임<sup>41)</sup>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인 「대외무역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는 '대외무역조사와 관련된 조사사항 및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제41조와 제42조에는 반덤핑의 정의와 그 대응방안을 함축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제50조는 무역구제조치의 우회에 대응하는 내용을 규정함<sup>42)</sup>

40) 오문갑, 「중국의 반덤핑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4.2.27., pp. 122~124

41) 김용길,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6.8, pp.52~53

-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인 「반덤핑조례」는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주요한 법원으로 전반적인 반덤핑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함
  - 상무부가 제정한 반덤핑제도의 대표적인 부문규장인 「반덤핑산업손해조사규정」은 실질적 피해의 인정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
- 중국의 덤핑성립요건은 WTO 반덤핑협정과 같이 「반덤핑조례」 제8조에서 ① 덤핑의 존재, ②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존재, ③ 덤핑과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입증임
- 「반덤핑조례」 제3조에서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을 그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말함
- 「반덤핑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 등은 덤핑으로 인하여 이미 확립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이미 확립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으로 구성됨
- ‘실질적인 피해’란 국내산업에 대해 이미 피해가 조성된 것과 무시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함<sup>43)</sup>
- 「반덤핑조례」 제8조 제1항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이 대량 증가할 가능성
    -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적 수량 또는 중국 내 동종물품의 생산이거나 소비의 수량이 대량으로 증가되었는지의 여부 등 덤핑 수입제품이 대량 증가할 가능성을 포함함
  -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이 대폭 억제 또는 인하될 가능성
    -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이 대폭 인하되거나 중국 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42) 신성식·최혜범,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2011.12, pp.326~327

4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View.do?law\\_seq=3892&history\\_seq=3275](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View.do?law_seq=3892&history_seq=3275),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4조(검색일자: 2018. 6. 18.)

대폭 억제 또는 인하되는 등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함

-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요소 및 지표(피해판정요소)의 심사<sup>44)</sup>
    - 판매·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생산율·투자수익 상황·설비 이용률에서 나타나는 실제 하락이나 잠재된 하락
    - 국내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덤핑 폭의 정도
    - 현금흐름·재고·취업·보수·산업성장·자금축적·투자능력 부문에서 받는 실제 혹은 잠재된 부정적인 영향
  - 덤핑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능력, 수출 능력, 피조사 제품의 재고현황
  -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
- 「반덤핑조례」 제8조 제3항은 덤핑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확정할 경우 긍정적 증거에 기초해 동 피해를 야기한 덤핑이 아닌 요소를 덤핑에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덤핑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함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처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덤핑물품 이외의 특정 요소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상무부는 실무적으로 덤핑 이외 다른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음<sup>45)</sup>
    -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덤핑 이외 기타 요소들의 예는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생산성, 경영관리상황, 국내산업정책, 불가항력, 생산능력의 확대, 생산량 확대, 세계경제의 영향, 원자재 가격의 변화, 상업유통경로 등이 있음

44)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반덤핑산업피해조사규정」 제7조

45) 광노성·마광·최송자·왕봉안, 「중국의 덤핑, 보조금 조치에 관한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2012.11, p.40

##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이하에서는 중국의 유기·무기 화학제품(HS 28~29류)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보고서상 실질적 피해판정 내용을 요약·정리함

### 1) 스티렌(Styrene, HS code 2902.50)<sup>46)</sup>

#### 가) 개요

- 중국 내에서 스티렌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만, 그리고 미국의 스티렌 물품이 덤핑 수입됨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억제를 초래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임
  - 덤핑물품의 낮은 수입가격은 중국 내 동종물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가격상승을 심각하게 억제시켜 합리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
  - 중국 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나 덤핑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기대와 달리 설비가동률, 세전이익률 및 투자수익률이 감소됨
  - 국내 시장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상승하였으며, 덤핑물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기대만큼 매출액과 현금흐름이 증가하지 않음

#### 나) 상세내용

-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조사기간) 중국으로 미국, 한국 및 대만의 스티렌(이하 덤핑물품)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덤핑물품이 스티렌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46)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華人民共和國苯乙烯產業申請對原產于韓國、台灣地區和美國的進口苯乙烯產品進行反傾銷調查」, 2017.06.23., <http://trb.mofcom.gov.cn/article/cs/201207/20120708241636.shtml>(검색일자: 2018.6.18.)

- 조사기간 동안 덤프물품의 총수입물량은 각각 184만톤, 203만톤, 201만톤 및 210만톤으로, 2016년은 2013년에 비해 14.26% 증가함
- 조사기간 동안 중국의 스티렌 수입시장에서 덤프물품인 스티렌 수입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13%, 54.46%, 53.92% 및 60.17%로, 2016년은 2013년에 비해 10.04% 증가함

[그림 III-17] 덤프물품 수입량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톤, %)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苯乙烯产业申请对原产于韩国、台湾地区和美国的进口苯乙烯产品进行反倾销调查」, 2017.5.25., p.38 및 저자 재구성

- 덤프물품의 수입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이 심각하게 억제됨
- 조사기간 동안 덤프물품의 가격은 톤당 1,722.83달러, 1,592.82달러, 1,115.30달러 및 1,038.02달러 순으로 점차 하락함
  - 2014년, 2015년 및 2016년의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7.55%, 29.98% 및 6.93% 하락했으며, 2016년 수입가격은 2013년 대비 39.75%로 급격히 하락함

[그림 III-18]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위안화/톤)



- 주: 1. 덤핑물품의 위안화 수입가격은 미화수입가격×(1+수입관세율)으로 계산함  
 2. 위안화와 달러 간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에 공시된 환율을 적용  
 (2013년 6.1956, 2014년 6.1431, 2015년 6.2272 및 2016년 6.6401)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苯乙烯产业申请对原产于韩国、台湾地区 and 美国的进口苯乙烯产品进行反倾销调查」, 2017.5.25., p.40, 42

- 조사기간 동안 국내 시장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나 덤핑물품의 낮은 수입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설비가동률은 하락함
  - 중국 내 스티렌 수요는 849만톤, 839만톤, 907만톤 및 998만톤으로 2013년 대비 2016년에 7.14% 증가함
  - 설비가동률은 각각 93.16%, 85.77%, 84.11% 및 85.69%로 감소하여 2016년은 2013년 대비 약 7.48% 감소하였음
  
- 덤핑물품의 불공정 가격 정책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이익이 크게 악화됨
  - 2013년의 동종물품 가격은 톤당 1만 775.81위안으로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인 1만 847.82위안보다 72.06위안 낮았는데, 2016년에는 오히려 톤당 167.89위안이 증가하여 덤핑물품 단가 대비 이익률은 2013년 7.84%에서 2016년 0.98%로 크게 하락함

〈표 III-9〉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단가와 이익 비교

(단위: 위안화/톤, %)

연도	덤핑물품 수입가격	중국 동종물품			차이	
		판매가격	원가(비용)	이익률	이익금액 <sup>1)</sup>	이익률 <sup>2)</sup>
2013	10,847.82	10,775.81	10,002.28	7.18	845.54	7.84
2014	9,940.00	9,327.77	9,650.71	-3.46	289.29	3.10
2015	7,058.62	7,242.04	7,171.48	0.97	-112.86	-1.55
2016	7,022.43	7,190.32	7,093.57	1.35	-71.14	0.98

주: 1) 덤핑물품 수입가격에서 중국 동종물품 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이익금액을 중국 동종물품 판매가격으로 나눈 비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苯乙烯产业申请对原产于韩国、台湾地区和美国的进口苯乙烯产品进行反倾销调查」, 2017.5.25., p.43

[그림 III-19] 동종물품의 국내 수요와 생산능력·생산량·설비가동률 추이

(단위: 톤, %)



주: 1. 국내 수요는 국내 총 생산량+국내 총 수입량-국내 총 수출량으로 계산함

2. 설비가동률은 생산량÷생산능력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苯乙烯产业申请对原产于韩国、台湾地区和美国的进口苯乙烯产品进行反倾销调查」, 2017.5.25., p.45

□ 조사기간 동안 국내산업은 수요증가에 따라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늘렸으나, 세전이익의 하락으로 투자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 세전이익은 각각 872만위안, -322만위안, 74만위안 및 132만위안이며, 2016

년 세전이익은 2013년 대비 약 84.88%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평균투자금액은 각각 9,627만위안, 9,473만위안, 9,797만위안 및 1만 364위안 이었으며 2014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함
  - 그러나 투자수익률은 세전이익의 감소로 조사기간 동안 각각 9.06%, -3.41%, 0.76% 및 1.27%였음

[그림 III-20] 동종물품의 세전이익과 투자수익 추이

(단위: 위안화, %)



- 주: 1. 세전이익률은 세전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2. 투자수익률은 세전이익을 평균투자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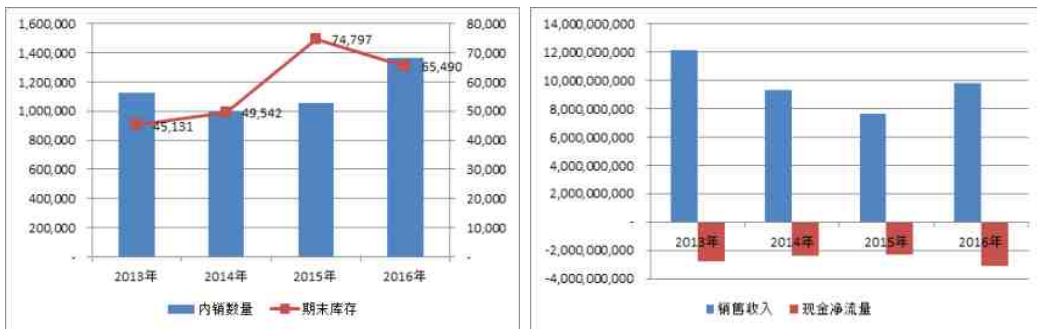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苯乙烯产业申请对原产于韩国、台湾地区和美国的进口苯乙烯产品进行反倾销调查」, 2017.5.25., pp. 50~51

- 국내산업 물품의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가동률의 하락으로 재고는 증가하였으며 덤핑물품과의 경쟁은 매출 증가를 억제시켰고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침
  - 조사기간 동안 국내산업 물품의 판매량은 각각 112만톤, 99만톤, 105만톤 및 136만톤이며 2016년 판매량은 2013년 대비 20.89% 증가했지만, 재고량은 2013년 4만 5,100톤에서 2016년 6만 5,500톤으로, 2016년 재고량은 2013년 과 비교하여 약 45.11% 증가하였음
  - 조사기간 동안 국내산업 물품의 매출액은 각각 121억위안, 93억위안, 76억위안 및 97억위안으로 2016년 매출액은 2013년 대비 약 19.33% 감소하였고 동시

에 현금흐름은 지속적인 마이너스로 각각 -27억 5,200만원, -23억 9천만원, -22억 8,400만원 및 -30억 9,400만원으로 2016년 현금흐름은 2013년 대비 약 12.42% 하락하였음

[그림 III-21] 동종물품의 판매량·재고와 매출액·현금흐름 추이

(단위: 톤, 위안화, %)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苯乙烯产业申请对原产于韩国、台湾地区和美国的进口苯乙烯产品进行反倾销调查」, 2017.5.25.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2018년 현재 중국은 덤핑물품을 <표 III-8>와 같이 6.2%에서 7.5% 사이의 덤핑 관세율을 각각의 덤핑 대상업체에 부과 중임

<표 III-10> 중국의 덤핑물품(스티렌) 규제 경과 내용

(단위: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반덤핑 조사개시	2017.06.23	-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7.02.12	- 한화토탈: 7.8 - 여천NCC: 7.8 - 롯데케미칼: 8.4 - LG화학: 8.0 - SK 종합화학: 8.0 - 기타: 8.4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최종판정	2018.06.22	- 한화토탈: 6.2 - 여진NCC: 6.2 - 롯데케미칼: 7.5 - LG화학: 6.6 - SK 종합화학: 6.6 - 기타: 7.5
덤핑관세부과	2018.06.23	-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8>  
(검색일자: 2018.7.26.)

## 2) 메틸이소부틸케톤(Methyl isobutyl ketone, HS code 2914.13)<sup>47)</sup>

### 가) 개요

- 덤핑물품의 ① 중국 내 수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②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과 판매가 감소하였고 이는 장기간 재정상태의 악화로 이어져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함
  - 덤핑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전반적인 생산능력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 생산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은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졌고 추가적인 동종물품의 시장가격의 지속적 하락은 세전이익, 투자이익, 현금흐름 등에 악영향을 미침
  - 국내산업은 재정 상태의 악화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을 줄여야만 했음

### 나) 상세내용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조사기간) 중국으로 한국, 일본 및 남아프리카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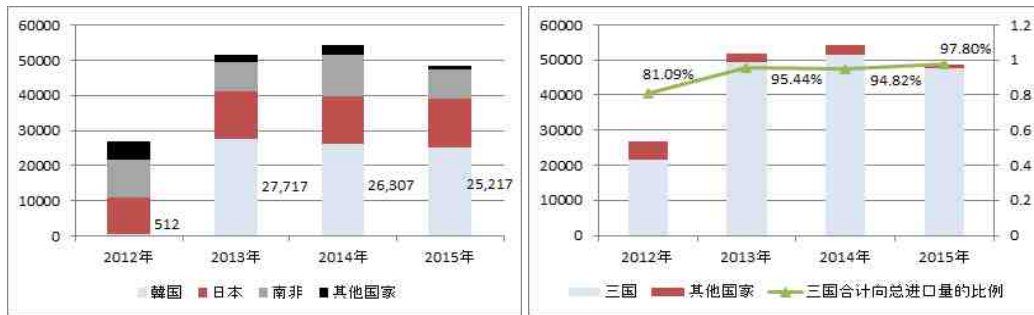
47)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公告2017年第16号·關於對原產于韓國、日本和南非的進口甲基異丁基(甲)酮反傾銷立案公告」, 2017.03.27., <http://trb.mofcom.gov.cn/article/cs/201703/20170302541207.shtml>(검색일자: 2018.6.18.)

국의 메틸이소부틸케톤(이하 덤프물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총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조사기간 동안 덤프물품의 총수입물량은 각각 2만 천톤, 4만 9천톤, 5만 천톤 및 4만 7천톤이며, 특히 한국은 2012년 512톤에서 2015년 2만 5천톤으로 약 4,824% 수입량이 증가함
- 조사기간 동안 중국의 메틸이소부틸케톤의 총수입 중 덤프물품의 수입비율은 각각 81.09%, 95.4%, 94.82% 및 97.80%임

[그림 III-22] 덤프물품 수입량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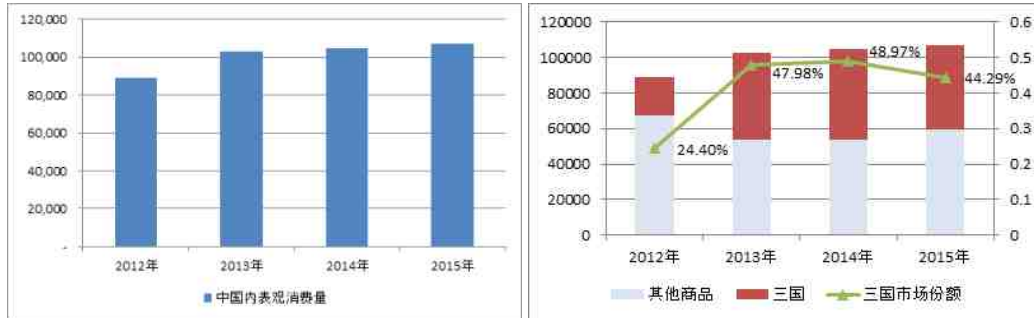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公告2017年第16号·关于对原产于韩国、日本和南非的进口甲基异丁基(甲)酮反倾销立案公」, 2017.3.27., pp.41~4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국내 소비시장이 커짐에 따라 3국의 시장 점유율 또한 크게 증가함

- 조사기간 동안 메틸이소부틸케톤의 국내수요는 각각 8만 8천톤, 10만 2천톤, 10만 5천톤 및 10만 7천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덤프물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4.4%, 47.98%, 48.97% 및 44.29%로 2013년도에 한 차례 크게 증가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그림 III-23] 국내수요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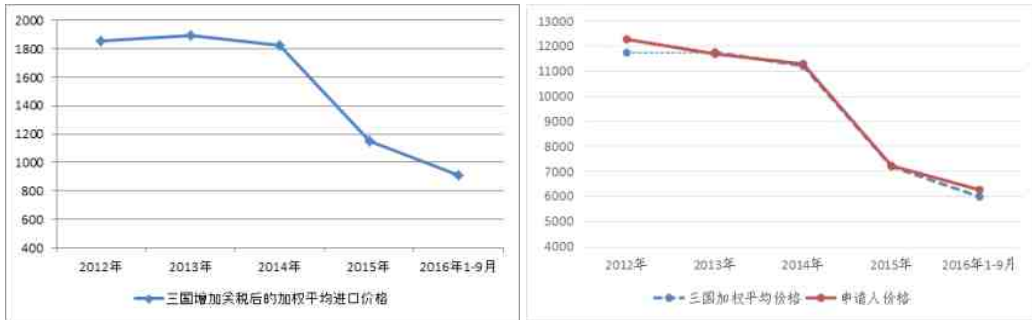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公告2017年第16号·关于对原产于韩国、日本和南非的进口甲基异丁基(甲)酮反倾销立案公」, 2017.3.27., pp.43~44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3국의 생산능력은 각국의 국내소비를 초과하였고 그 결과 잉여분은 해당 물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으로 수출이 집중됨
  - 2015년 덤핑물품에 대한 한국의 수출량은 3만 6천톤, 일본은 3만 5천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만 4천톤으로, 3국의 총수출량은 12만 5,600톤임
  
- 덤핑물품 수입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해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도 같이 하락함
  - 조사기간 동안 관세를 반영한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1,856달러, 1,859달러, 1,820달러 및 1,151달러 순으로 점차 하락함
    - 2013년, 2014년 및 2015년의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18%, -4.73% 및 -35.88% 증감했으며, 2015년 수입가격은 2012년 대비 38.8%로, 급격히 하락함
  - 동종물품의 가격은 톤당 1만 2,252위안, 1만 1,669위안, 1만 1,267위안 및 7,203위안으로 가격이 동반 하락함
    - 덤핑물품과의 가격 차이는 조사기간 각각 -532위안, 71위안, -81위안 및 -30위안으로 높지 않음

[그림 III-24]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위안화/톤)



주: 1. 덤핑물품의 위안화 수입가격은 미화수입가격×(1+수입관세율)\*환율로 계산함

2. 위안화와 달러간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에 공시된 환율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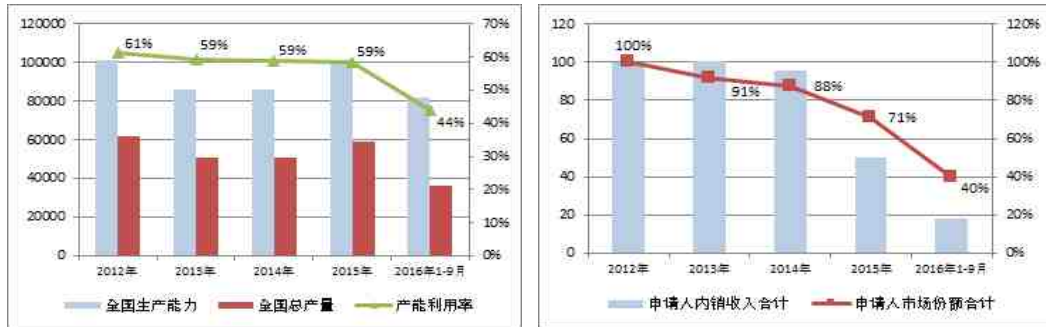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公告2017年第16号 关于对原产于韩国、日本和南非的进口甲基异丁基(甲)酮反倾销立案公」, 2017.3.27., pp.47~48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국내산업의 설비가동률은 소폭 하락 추세이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음

- 설비가동률은 2012년 61%에서 2013~2015년까지 59%를 유지하다가 2016년 3분기 기준 44%로 크게 하락함
- 매출액은 2012년을 100만위안으로 가정 시, 조사기간 각각 100만 7,400위안, 95만 3,300위안, 50만 4,400위안 및 18만 1,900위안이며 2016년 3분기는 2015년 대비 약 63.93% 감소하였으며, 2012년 시장점유율을 100%로 가정 시, 조사기간 각각 91.42%, 87.64%, 71.06% 및 39.96%이고 2016년 3분기는 2015년 대비 약 43.76% 하락하였음

[그림 III-25] 동종물품의 설비가동률과 매출액·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톤, 1만위안, %)



- 주: 1. 설비가동률은 생산량÷생산능력×100임  
2. 시장점유율은 매출액÷국내소비금액×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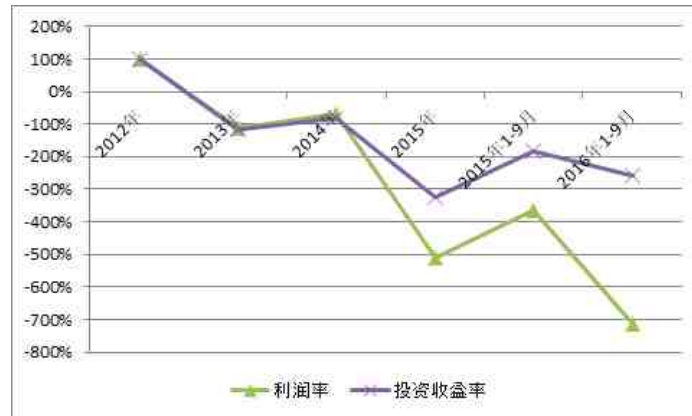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公告2017年第16号 关于对原产于韩国、日本和南非的进口甲基异丁基(甲)酮反倾销立案公」, 2017.3.27, 2017.5.25., p.45

□ 동종물품 판매량과 매출액의 하락은 세전이익과 투자수익의 하락으로 이어짐

- 2012년 세전이익률을 100%로 가정 시, 조사기간 각각 -111.19%, -68.27%, -508.81%로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했으며, 2015년 3분기는 -363.62%, 2016년 같은 기간 -712.43%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임
- 2012년 투자수익률을 100%로 가정 시, 조사기간 각각 -117.73%, -79.67%, -323.88%로 세전수익률과 같이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2015년 3분기는 -185.34%, 2016년 같은 기간 -259.57%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임

[그림 III-26] 동종물품의 세전이익과 투자수익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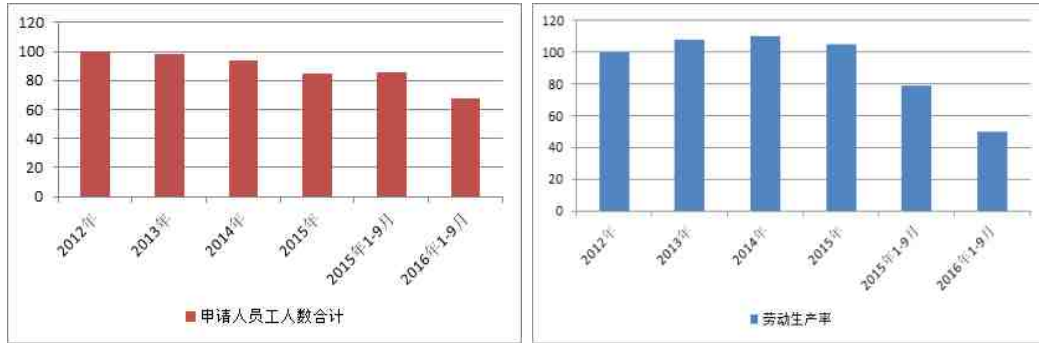
- 주: 1. 세전이익률은 세전이익 ÷ 매출액 × 100임  
 2. 투자수익률은 세전이익 ÷ 평균투자금액 × 100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公告2017年第16号 关于对原产于韩国、日本和南非的进口甲基异丁基(甲)酮反倾销立案公」, 2017.3.27., p.55~57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고용률은 조사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추세였으며, 노동생산성은 2015년 부터 크게 감소함
  - 2012년 총고용인원을 100명으로 가정 시, 조사기간 각각 98.58명, 93.84명, 84.83명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2015년 3분기는 85.31명, 2016년 같은 기간 67.3명으로 2016년은 동일기간 전년 대비 21.11% 감소함
  - 2012년 노동생산성을 1인당 100톤으로 가정 시, 조사기간 각각 108.05톤, 110.4톤, 105.11톤으로 2015년은 전년 대비 4.79% 감소하였으며, 2015년 9월은 79.21톤, 2016년 같은 기간 49.93톤으로 2016년은 동일기간 전년 대비 36.96% 감소함

[그림 III-27] 동종물품의 고용률과 노동생산성<sup>1)</sup> 추이

(단위: 톤/인, 인)



주: 1) 노동생산성은 연간생산량 ÷ 총직원 수 × 100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公告2017年第16号 关于对原产于韩国、日本和南非的进口甲基异丁基(甲)酮反倾销立案公告」, 2017.3.27., p.61~63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2018년 현재 중국은 덤핑물품을 <표 III-11>과 같이 18.5%에서 32.3% 사이의 덤핑관세율을 각각의 덤핑 대상업체에 부과 중임

〈표 III-11〉 중국의 덤핑물품(메탈이소부틸케톤) 규제 경과 내용

(단위: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2017.02.09	-
반덤핑 조사개시	2017.03.27	-
반덤핑 예비판정	2017.11.20	- 금호P&B화학: 29.9 - 기타: 32.3
반덤핑 최종판정 및 부과	2018.03.19	- 금호P&B화학: 18.5 - 기타: 32.3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8>  
(검색일자: 2018.7.26.)

### 3) 태양광폴리실리콘(Solar-grade polysilicon, HS code 2804.61-90)<sup>48)</sup>

#### 가) 개요

- 중국 내에서 태양광폴리실리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수입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2011년부터 국내산업의 기업이 파산하거나 생산라인을 폐쇄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덤핑물품 수입가격의 하락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비용-가격 압박(cost-price squeeze)' 효과를 유발하여 국내 물품에서 발생해야 할 가격 인상을 크게 억제하였음
  - 2011년부터 덤핑과 국내산업 간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는데, 세전이익, 매출액 대비 현금흐름, 그리고 투자수익률은 2011년 1~4월 대비 2012년 같은 기간에 급격히 떨어졌다고 검토하였음

#### 나) 상세내용

-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조사기간) 미국과 한국의 태양광폴리실리콘(이하 덤핑물품) 대(對)중국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
  -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1년 수입량은 3만 8,837톤으로 2008년 7,303톤 대비 총 432% 증가함
  - 태양광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의 총수입액 대비덤핑물품의 수입 비중은 2008년 43%에서 2011년 60%로 크게 증가함
  - 덤핑물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 추세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았음

---

48)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公告2012年第40号 對原产于美國和韓國的進口太陽能級多晶硅進行反傾銷立案調查的公告」, 2012.7.20, <http://trb.mofcom.gov.cn/article/cs/201207/20120708241636.shtml>(검색일자: 2018.6.18.)

[그림 III-28] 덤핑물품의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추세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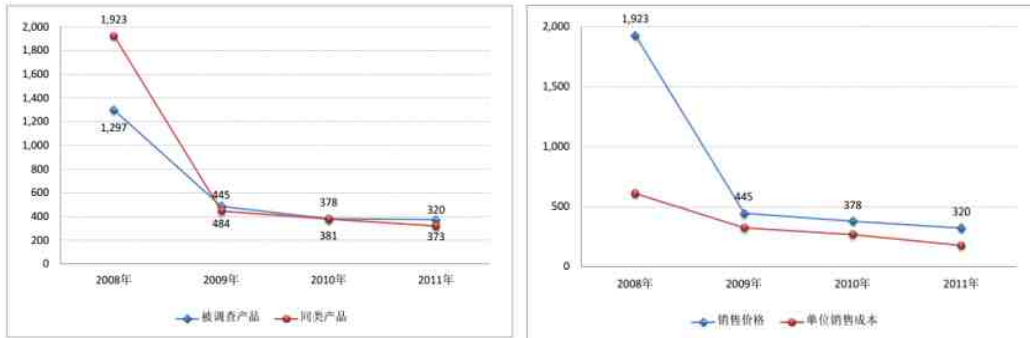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12年第40号 对原产于美国和韩国的进口太阳能级多晶硅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 2012.7.20., p.52

- 덤핑물품 수입가격의 지속적 하락은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비용-가격 압박(cost-price squeeze) 효과를 유발하여 국내 물품의 가격 인상을 크게 억제하였음
-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은 해마다 감소하였는데, 국내산업 물품의 가격도 이와 유사하게 하락하여 2011년에는 오히려 덤핑물품의 가격보다도 낮아지게 됨
  -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은 2008년 킬로그램당 1,297위안에서 2011년 373위안으로 71% 하락함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의 가격은 2008년 킬로그램당 1,923위안에서 2011년 320위안으로 83% 하락함
-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단가 차이는 2008년 킬로그램당 단가범위 1,150~1,450위안에서 2011년 단가범위 130~160위안으로, 단가 감소율은 89%에 달함

[그림 III-29]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추이

(단위: 위안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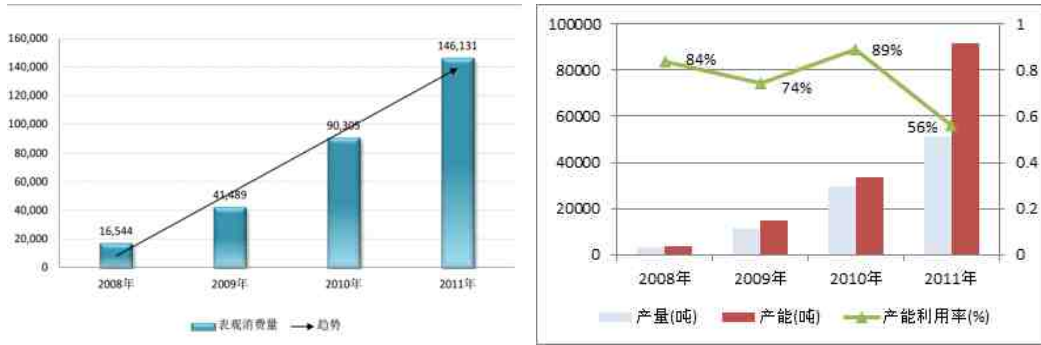
주: 판매단가는 비공개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12年第40号 对原产于美国和韩国的进口太阳能级多晶硅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 2012.7.20., p.54, 56

- 국내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 능력과 생산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 대부분이 생산을 중단한 결과, 설비가동률은 201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3% 감소하였음
- 조사기간 동안 국내 시장의 폴리실리콘 수요는 각각 1만 6,544톤, 4만 1,489톤, 9만 305톤 및 14만 6,131톤으로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대비 2011년 국내 소비는 약 783% 증가함
- 2011년 이후 국내 폴리실리콘 산업은 대규모 생산 중단 사태에 빠졌는데, 2011년 12월, 최초로 파산절차를 시작한 국내 기업이 발생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전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속도를 단축시켰음
  - 2011년 12월 중국 비철금속 산업 협회 실리콘 산업 분원(China Non-ferrous Metals Industry Association Silicon Industry Branch)의 통계에 따르면 A-Board에 등록된 7개의 기업 중 3개가 생산을 중단, 이미 생산에 들어간 43개의 기업 중 7~8개의 기업만이 생산중이며 나머지 기업은 생산 라인을 폐쇄함
- 설비가동률은 조사기간 동안 각각 84%, 74%, 89% 및 56%로 전년 대비 2011년에 33% 정도 크게 감소함

[그림 III-30] 동종물품의 국내수요와 생산량·생산능력·설비가동률 추이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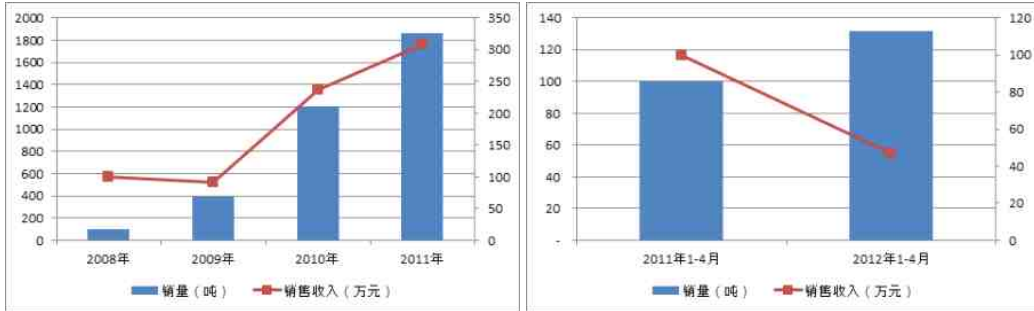
주: 설비가동률은 생산량÷생산능력\*100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12年第40号 对原产于美国和韩国的进口太阳能级多晶硅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 2012.7.20., p.58 및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조사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 매출액도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매출액은 판매량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특히 2012년 1~4월 기준으로 매출액의 마이너스 성장이 두드러짐
- 국내물품의 판매량은 2008년 100톤을 기준으로, 각각 394톤, 1,206톤 및 1,858톤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008년 100만위안에서 2009년 91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함
  - 앞서 언급한 대로,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은 2008년 킬로그램당 1,297위안에서 2009년 484위안으로 63%나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도 2008년 킬로그램당 1,923위안에서 2009년 445위안으로 77%나 감소함
- 2011년 1~4월 기간의 판매량을 100톤으로 한다면 2012년 같은 기간은 132톤으로, 약 32% 증가한 반면, 매출액은 같은 기간 대비 100만위안에서 47만위안으로 약 53%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그림 III-31] 동종물품 판매량과 매출액 추이

(단위: 톤, 만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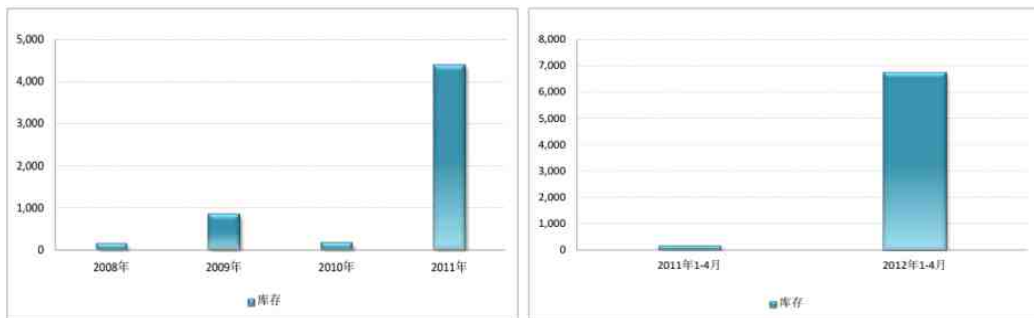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12年第40号 对原产于美国和韩国的进口太阳能级多晶硅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 2012.7.20., p.6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낮은 재고를 유지하던 국내산업은 2011년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2012년에 재고량이 크게 증가함
  - 2008년 재고량을 100톤으로 가정 시, 각각 576톤, 115톤 및 3,006톤이며 2011년 재고는 전년 대비 25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12년 1~4월에 2011년 1~4월의 재고량을 100톤으로 가정 시, 2012년 같은 기간은 4,545톤으로 약 44배 증가함

[그림 III-32] 동종물품 재고량 추이

(단위: 톤)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12年第40号 对原产于美国和韩国的进口太阳能级多晶硅进行反倾销立案调查的公告」, 2012.7.20., p.65

- 국내산업의 세전이익, 현금흐름과 투자수익률은 2012년 1~4월 기간을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여 투자와 자금조달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음
- 세전이익은 2011년 1~4월 모두 100만위안으로 가정하고 2012년 동일기간과 비교했을 때, 신청자의 매출액은 47만위안, 세전이익은 -12만위안, 세전이익률은 -27%로 모든 항목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투자수익률(평균투자금액 대비 세전이익)은 2011년 1~4월 24%에 비해 2012년 동일기간 -2%로 약 108%의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 매출액 대비 현금흐름은 2011년 1~4월 46만위안에 비해서 2012년 동일기간은 -63만위안으로 현금흐름이 약 237% 급격히 하락하여 회사의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나타냄
- 2018년 현재 중국은 <표 III-12>와 같이 18.5%에서 32.3% 사이의 덤핑관세율을 각각의 덤핑 대상업체에게 부과 중임

<표 III-12> 중국의 덤핑물품(태양광 폴리실리콘) 규제 경과 내용

(단위: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2012.07.09	-	-
반덤핑 조사개시	2012.07.20	-	미국산과 한국산
반덤핑 추가 조사개시	2012.11.01	-	EU산 추가
반덤핑관세 소급부과 위한 조사개시	2011.11.26	-	-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	2013.07.18	- 용진폴리실리콘: 12.3 - OCI: 40.0 - 한국실리콘: 80.0 - KCC: 48.7 - Innovation Silicon: 48.7 - 기타: 12.3	-

규제내용	일자	덤핑대상업체 및 덤핑관세율	비고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2014.01.20	- 용진폴리실리콘: 12.3 - OCI: 2.4 - 한국실리콘: 2.8 - 한화케미칼·삼성정밀화학: 12.3 - KCC: 48.7	-
반덤핑 중간재심 개시	2016.11.22	-	-
반덤핑 중간재심 결과	2017.11.22	- 용진폴리실리콘: 113.8 - OCI: 4.4 - 한국실리콘: 9.5 - 한화케미칼: 8.9 - SMP Ltd 88.7 - KAM Corp: 113.8 - Innovation Silicon: 113.8 - 기타: 88.7	-

자료: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8>  
(검색일자: 2018.7.26.)

### 3. EU

#### 가. 반덤핑조치 현황

- WTO에 따르면 1988~2017년 기간 중 WTO에 보고된 EU의 對세계 반덤핑규제 (확정 조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됨<sup>49)</sup>
  - 상기 자료에 따르면 EU는 1988년 중국을 시작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3가지 구간 ① EU의 최초 반덤핑규제 조회시점부터 WTO 출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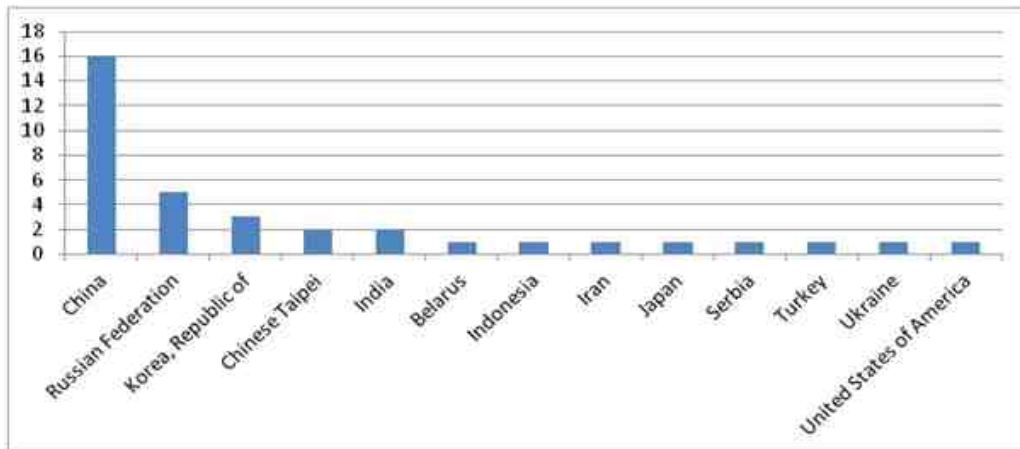
49)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23.)

전(1988~1994년) ② WTO 출범 이후부터 최근 5년 이전(1995~2012년) ③  
최근 5년간(2013~2017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최근 5년간(2013~2017년) 반덤핑규제 건수는 총 36건이며 이 중 중국이 16건으로 1위, 우리나라가 총 3건으로 3위를 차지함
- 중국에 이어 러시아 5건, 한국 3건, 대만·인도 각 2건, 벨라루스·인도네시아·이란·일본·세르비아·터키·우크라이나·미국 각 1건 순임

[그림 III-33] 최근 5년간 EU의 반덤핑조사 국가 및 건수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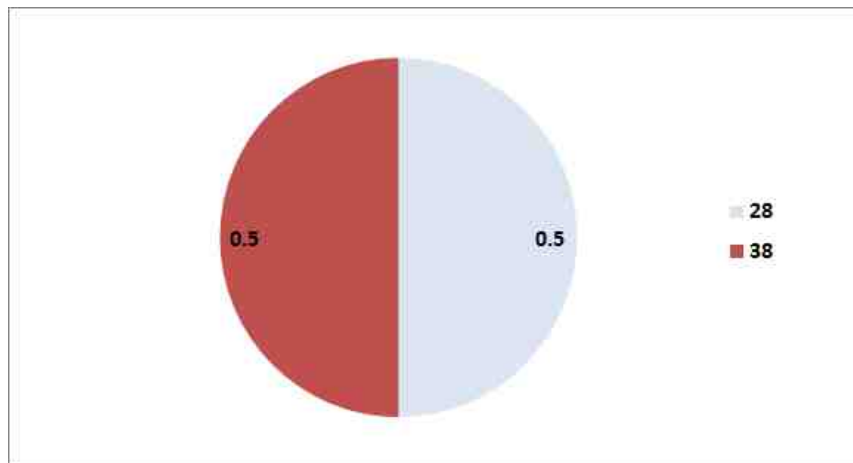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EU는 전체 조사기간(1988~2017년) 중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발동하였으며, 각 기간별로 품목 구성의 변화가 나타났음
- 특히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의 경우 1995~2012년 기간 중에는 72류 10.2%, 73류 32.9%에서 2013~2017년 기간 중에는 72류 85%, 73류 6.1%로 철강과 철강제품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바뀌었음

- 1988~1994년 기간 중 EU의 반덤핑 품목은 무기화학품(28류) 50%와 화학공업제품(38류) 50%의 비중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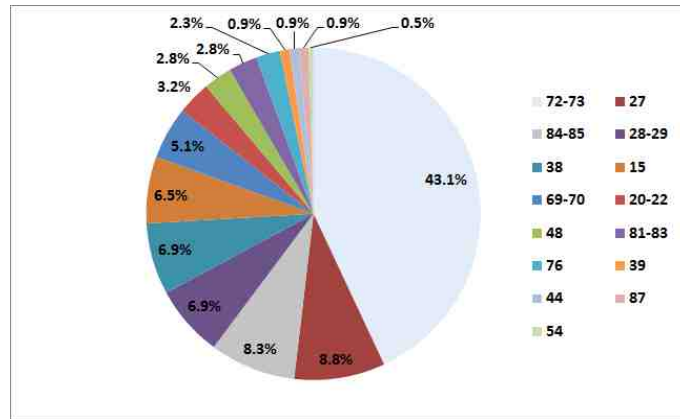
[그림 III-34] EU의 1988~1994년 기간 중 품목 구성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1995~2012년 기간 중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이 총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전 기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다변화된 품목 구성을 보임
  - 광물성연료(27류) 8.8%, 전기전자(84~85류) 8.3%, 무기 및 유기화학품(28~29류) 6.9%, 화학공업제품(38류) 6.9%, 동식물성유지(15류) 6.5%, 도자제품 및 유리(69~70류) 5.1%, 채소·과실의 조제품 및 음료·주류·식초(20~22류) 3.2%, 지와판지(48류) 2.8%, 기타 비금속 및 각종 비금속제품(81, 83류) 2.8%, 알루미늄과 그 제품(76류) 2.3%, 플라스틱과 그 제품(39류) 0.9%, 목재·목탄(44류) 0.9%, 일반차량(87류) 0.9%, 인조필라멘트섬유(54류) 0.5% 등임
  - 동 기간은 전체 조사기간(1988~2017년) 중 가장 많은 종류의 품목을 규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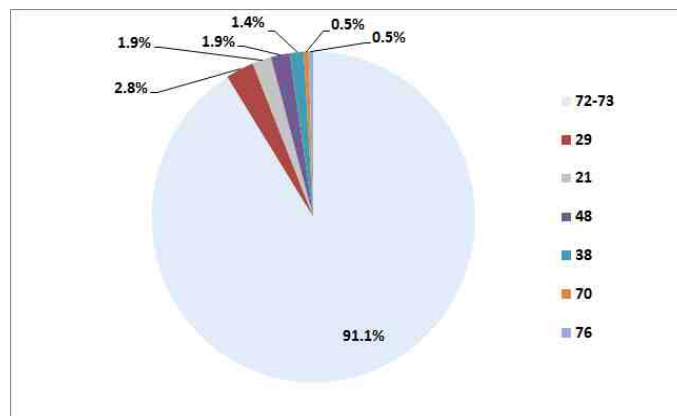
[그림 III-35] EU의 1995~2012년 기간 중 품목 구성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2013~2017년 기간 중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이 총 9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전 기간에 비해 최근 들어 품목 구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유기화학품(29류) 2.8%, 채소과실제품(21류) 1.9%, 지·판지(48류) 1.9%, 화학공업제품(38류) 1.4%, 유리(70류) 0.5%, 알루미늄(76류) 0.5%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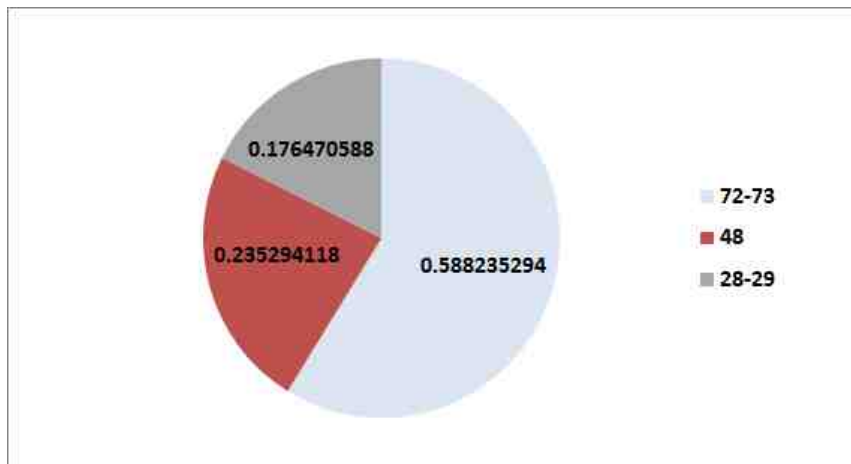
[그림 III-36] EU의 2013~2017년 기간 중 품목 구성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덤핑 규제는 WTO 통계기간 동안 총 5건이 진행되었으며 철강제품(72~73류)이 5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지와판지(48류)에 23.5%, 무기 및 유기 화합품(28~29류)에 17.6%의 반덤핑규제를 조치함

[그림 III-37] EU의 對韓 반덤핑규제 대상품목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EU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는 EU 반덤핑 기본규칙(2016/1036)이며, 동 규정은 WTO 반덤핑규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sup>50)</sup>
- 2017년 12월 20일 기존 규칙을 일부 개정한 반덤핑규칙(2017/2321)을 발효함

50)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 상기 규정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i) 당해 수입물품이 덤핑(dumping)된 사실이 있을 것
  - (ii) 덤핑으로 인해 공동체산업(Community industry)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어야 함
  - (iii)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공동체 이익(Community interest)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함
  
- 반덤핑규칙 제3조(피해의 결정)에서는 피해산정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상기 규정에 따라 피해(injury)는 공동체산업(Community industry)에 대한 실질적 피해, 공동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 및 공동체산업의 실질적 확립 지연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sup>51)</sup>
  - 공동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및 공동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도 피해판정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려요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음
  
- 피해의 판정은 명백한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sup>52)</sup>
  - (a) 덤핑 수입량과 공동체 시장(Union market) 내 동종상품(like product)의 가격에 대한 수입의 효과
    - 동종상품(like product)은 모든 면에서 조사대상 상품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

51) 반덤핑규칙 제3조 제1항

52) 반덤핑규칙 제3조 제2항

2. A determination of injury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shall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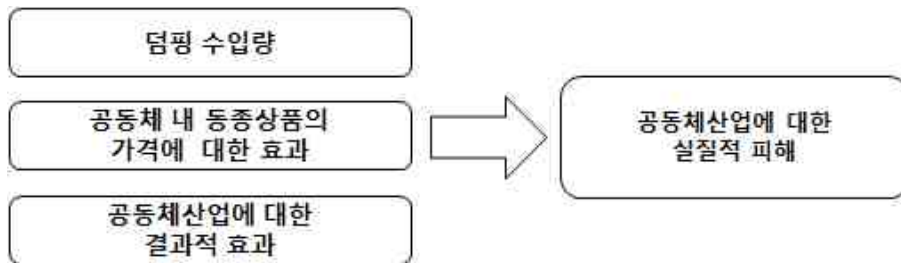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Union market for like products;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ose imports on the Union industry.

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상품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상품을 의미함<sup>53)</sup>

- (b) 공동체산업(Union industry)에 대한 수입의 영향
  - 공동체산업(Union industry)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공동체 내 모든 생산자 또는 집단적 생산량(collective output)이 공동체 내 총생산 중 대부분의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함<sup>54)</sup>

[그림 III-38] EU 반덤핑규정상 실질적 피해의 검토 요소



자료: 저자 작성

- 상기 피해의 판정을 위한 검토 요소는 ① 덤핑 수입량 ② 공동체 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 ③ 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로 정리됨
  - (덤핑 수입량) 공동체 내의 생산이나 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sup>55)</sup>
  - (공동체 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 공동체 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한 동종상품의 상당한 가격 하락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수입의 효과가 동종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 상승을 방해했는지 여부<sup>56)</sup>

53) 반덤핑규칙 제1조 제4항

54) 반덤핑규칙 제4조 제1항 제(a)호

55) 반덤핑규칙 제3조 제3항

56) 반덤핑규칙 제3조 제3항

- (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 공동체산업에 대한 덤핑수입품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체산업의 상태(state)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요인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함<sup>57)</sup>
  - 과거 덤핑 효과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 공동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한 평가 및 지표
  - 실제 덤핑마진의 규모
  - 판매량,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설비가동률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감소
  - 공동체 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 상황과 관련된 제반 경제적 요소 및 지표들에 대한 평가
  
- 한편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사는 다음 2가지 요건을 따름
  - 모든 관련 증거로부터, 덤핑된 수입품이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덤핑 대상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 수준이 공동체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sup>58)</sup>
  - 공동체당국은 덤핑 수입품 외 공동체산업에 피해를 야기한 다른 기타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sup>59)</sup>
    -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수입량 및 수입가격
    - 소비의 위축 또는 소비 패턴의 변화
    - 외국 생산자와 공동체 생산자 간 제한적인 관행 및 동일 생산자들 간 경쟁
    - 공동체산업의 기술진보 및 수출 성과와 생산성

---

57) 반덤핑규칙 제3조 제5항

58) 반덤핑규칙 제3조 제6항

59) 반덤핑규칙 제3조 제7항

###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EU 사례의 경우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철강(72류)과 지와판지(48류)에 해당하는 반덤핑품목에 대해 조사함
  - EU가 우리나라에 제소한 반덤핑품목은 철강(72류)이 가장 많았으며, 지와판지(48류), 무기 및 유기 화학품(28~29류) 순임
  
- 철강(72류)에 해당하는 열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품목의 경우 EU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음
  - 2018년 5월 24일에도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착수하였음<sup>60)</sup>
  
- 철강(72류)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품목의 경우 2007년 3월 한국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였음<sup>61)</sup>
  - 다만 2009년 4월 유럽철강협회가 제소를 철회하면서 EU의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됨
  
- 지와판지(48류)에 해당하는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품목의 경우 2016년 2월 한국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
  - 2016년 11월 12.1%의 잠정 관세 부과 결정<sup>62)</sup> 이후 2017년 5월 10.3%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였음

60) EU는 역외산 철강 수입에 꾸준히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철강 생산 1위 국가인 중국임

61)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EU 집행위,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종결 결정」, 2009. 4. 20

62) Regulation (EU) No 2016/2005

1) 열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sup>63)</sup>

## 가) 개요

- 2016년 7월 7일 EU 집행위는 브라질,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열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2016년 5월 23일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유럽 내 총생산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소함

〈표 III-13〉 EU 사례 1)의 개요

Commodity	Initiation	Country	HS code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2016-07-07	Brazil, Iran, Russia, Ukraine, Serbia	720810,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2, 720853, 720854, 721114, 721119, 722519, 722530, 722540, 722619, 722620, 722691

- 피제소국: 브라질,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 품목: 열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 조사개시일: 2016. 7. 7.

6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95 of 5 October 2017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originating in Brazil, Iran, Russia and Ukraine and terminating the investigation on imports of certain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originating in Serbia, [http://eur-lex.europa.eu/eli/reg\\_impl/2017/1795/oj](http://eur-lex.europa.eu/eli/reg_impl/2017/1795/oj)(검색일자: 2018. 5. 16.)

- 유럽철강협회는 2012~2015년 기간 중 덤핑 수입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이후 EU 역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덤핑 수입품의 가격 수준을 따라야만 했고 이로 인해 산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브라질,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산 덤핑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역내산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EU 역내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은 조사기간 중 약 8% 감소하였음

#### 나) 상세내용

- EU 역내 피제조국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브라질,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덤핑된 수입량은 EU 반덤핑규정에서 명시한 무시할만한 수준(negligible)이 아니며, 각각 1.79%, 3.32%, 4.29%, 3.17%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함
  - 반면 세르비아에서 덤핑된 수입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었으며, 실제 브라질의 절반 수준에 그쳤음
- 
- 조사기간 동안 EU 산업의 생산량은 약 170만톤(2%) 감소, 생산능력은 약 250만톤(2%) 감소하였으며, 가동률은 74.1~76.2% 사이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표 III-14〉 EU 역내 피제소국의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 Import volume (tonnes) an market share

	2013	2014	2015	IP
<b>BRAZIL</b>				
Volume of imports from Brazil	41,895	108,973	580,525	608,541
Market share Brazil	0.13%	0.33%	1.65%	1.79%
<b>IRAN</b>				
Volume of imports from Iran	125,202	527,161	1,015,088	1,127,659
Market share Iran	0.39%	1.59%	2.89%	3.32%
<b>RUSSIA</b>				
Volume of imports from Russia	1,334,322	1,376,412	1,714,880	1,455,436
Market share Russia	4.13%	4.15%	4.88%	4.29%
<b>SERBIA</b>				
Volume of imports from Serbia	155,055	211,835	427,558	354,145
Market share Serbia	0.48%	0.64%	1.22%	1.04%
<b>UKRAINE</b>				
Volume of imports from Ukraine	905,397	939,545	1,084,477	1,075,244
Market share Ukraine	2.80%	2.84%	3.08%	3.17%
<b>COUNTRIES CONCERNED</b>				
Volume of imports from the countries concerned	2,561,872	3,163,926	4,822,529	4,621,026
Market share countries concerned	7.93%	9.55%	13.72%	13.62%
Index (2013 = 100)	100	120	173	172

자료: Eurostat. Market shares were established by comparing import volumes with the Union free market consumption as reported in table 2.

〈표 III-15〉 EU 역내 산업의 생산, 생산력, 설비가동률

## Production, production capacity and capacity utilisation

	2013	2014	2015	IP
Production volume (tonnes)	74,588,182	75,509,517	74,718,189	72,920,472
Index (2013 = 100)	100	101	100	98
Production capacity (tonnes)	100,667,836	100,040,917	98,093,841	98,162,252
Index (2013 = 100)	100	99	97	98
Capacity utilisation	74.1%	75.5%	76.2%	74.3%

자료: Eurofer questionnaire reply

- 조사기간 동안 EU 산업의 역내 소비량은 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2,750만톤에서 2,600만톤으로 5% 감소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85.1%에서 76.7%로 8%p 이상 감소함
- 이는 소비의 증가와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럽철강협회의 경쟁력이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표 III-16〉 EU 역내 산업의 생산, 생산력, 설비가동률

Free market consumption (tonners)

	2013	2014	2015	IP
Free market consumption	32,292,192	33,139,474	35,156,318	33,930,726
Index (2013 = 100)	100	103	109	105

Source: Eurofer questionnaire reply

Sales volume and market share (free market)

	2013	2014	2015	IP
Sales volume (tonnes)	27,468,243	27,910,748	27,327,906	26,027,000
Index (2013 = 100)	100	102	99	95
Market share	85.1%	84.2%	77.7%	76.7%
Index (2013 = 100)	100	99	91	90

자료: Eurofer questionnaire reply and Eurostat

- 2014년을 제외한 조사기간 동안 EU 역내 판매가격은 생산비용보다 낮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2015년 하반기부터 EU 생산자들이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격하락을 따라야 했음을 나타냄
- 피제조국의 덤핑 가격은 EU 역내 판매가격 하락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음

〈표 III-17〉 EU 역내 판매가격 및 생산 비용

## Sales prices in the free market in the Union

	2013	2014	2015	IP
Sales price (EUR/tonne)	498	471	427	383
Index (2013 = 100)	100	95	86	77
Unit cost of production (EUR/tonne)	511	469	431	413
Index (2013 = 100)	100	92	84	81

자료: Questionnaire reply of sampled Union producers

- 조사기간 동안 EU 역내 시장의 수익성은 7.8%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현금흐름은 감소하였으며, 투자는 2억 4천만유로를 넘었으나 투자수익률은 8.5% 감소하였음
- 수익성의 경우 2013년 발생한 손실은 일부 유로 위기와 관련이 있었으나,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회복할 수 있었음
- 현금흐름은 EU 역내 생산자의 자금 공급 능력을 의미하며, 조사기간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 상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2억 4천만유로를 넘었으나, 자본조달능력이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투자수익률은 투자 대비 순장부가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로 인해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였음

〈표 III-18〉 EU 역내 시장의 수익성, 현금흐름, 투자, 투자수익률

Profitability, cash flow, investments and return on investment

	2013	2014	2015	IP
Profitability of sales in the Union on the free market(% of sales turnover)	-2.7%	0.4%	-0.8%	-7.8%
Cash flow ('000 EUR)	139,295	221,982	122,723	-79,661
Index (2013 = 100)	100	159	88	-57
Investments ('000 EUR)	256,013	289,582	291,771	268,839
Index (2013 = 100)	100	113	114	103
Return on investment	-3.5%	0.5%	-1.0%	-8.5%

자료: Questionnaire reply of sampled Union producers

- 상기 내용을 토대로 EU 집행위는 EU 산업이 반덤핑규칙 제3조 제5항(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함
  - 특히 EU 역내 판매 수익성은 조사기간 중 2013년 -2.7%에서 -7.8%로 악화되었으며, 2014년을 제외하고는 손실이 누적됨<sup>64)</sup>
  - EU 산업의 판매량은 5% 감소, 판매단가는 20% 이상 감소, 생산량은 2% 감소, 고용은 5% 감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다른 피해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타남
  
- 조사개시 이후 최종판정 결과 EU 집행위는 브라질, 이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열연강판 수입에 대하여 톤당 17.6~96.5유로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 한편 상기 덤핑 혐의 조사에 포함되었던 세르비아의 경우 수입물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64) EU 역내 판매 수익성: 2013(-2.7%), 2014(0.4%), 2015(-0.8), IP(-7.8%)

2)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sup>65)</sup>

## 가) 개요

- 2014년 6월 26일 EU 집행위는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2014년 5월 13일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상기 제품에 대해 유럽 내 총 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소함

〈표 III-19〉 EU 사례 2)의 개요

Commodity	Initiation	Country	HS code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2014-06-26	China, Chinese Taipei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 피제소국: 중국, 대만
- 품목: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 조사개시일: 2014. 6. 26.

6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429 of 26 August 2015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aiwa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R0501&from=EN>(검색일자: 2018. 5. 16.)

-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2010~2012년 기간 중 중국과 대만 기업의 불공정한 저가 덤핑으로 수입 물량과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수입가격은 하락함과 동시에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됨으로써 역내 산업에 산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2013년부터 중국과 대만 철강 기업이 저가 덤핑으로 EU 국가에 6억 2천만유로 규모의 냉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출했으며, 이는 EU 시장의 17%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나) 상세내용

- 조사기간 동안 EU 역내 피제조국의 수입량은 18만 4,140톤에서 31만 2,517톤으로 70% 증가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5.8%에서 9.5%로 63% 증가함

〈표 III-20〉 EU 역내 피제조국의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Import volume and market share

	2010	2011	2012	Investigation period
Volume of imports from the RRC (tonnes)	56,477	95,876	87,759	143,420
Index	100	170	155	254
Market share (%)	1.8	2.9	2.7	4.3
Index	100	165	151	243
Volume of imports from Taiwan (tonnes)	127,664	173,968	132,392	169,097
Index	100	136	104	132
Market share (%)	4.0	5.4	4.1	5.1
Index	100	133	101	127
Volume of imports from the countries concerned (tonnes)	184,140	269,845	220,151	312,517
Index	100	147	120	170
Market share (%)	5.8	8.3	6.8	9.5
Index	100	143	116	163

자료: Eurostat

□ 조사기간 동안 EU 역내 피제조국의 수입가격은 전체적으로 13% 감소함

〈표 Ⅲ-21〉 EU 역내 피제조국의 수입가격

Import prices

	2010	2011	2012	Investigation period
PRC (EUR/tonne)	2,175	2,280	2,253	2,008
Index	100	105	104	92
Taiwan (EUR/tonne)	2,268	2,414	2,143	1,897
Index	100	106	94	84
The countries concerned (EUR/tonne)	2,239	2,366	2,187	1,948
Index	100	106	98	87

자료: Eurostat

□ 조사기간 동안 EU 산업의 역내 판매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5% 감소함

〈표 Ⅲ-22〉 EU 역내 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Sales volume and market share

	2010	2011	2012	Investigation period
Sales volume on the Union market (tonnes)	2,641,033	2,637,819	2,732,237	2,631,508
Index	100	100	103	100
Market share (%)	84	81	84	80
Index	100	97	100	95

자료: Sampled Union producers, complaint

□ EU 산업의 수익성, 현금흐름, 투자, 투자수익률 또한 모두 악화되었음

○ 수익성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1.5%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수익

성은 주로 니켈(nickel)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본 가격 때문이었음

- 현금흐름은 조사기간 4년 중 3년간 부정적이었으며, 2011년에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은 주로 반제품의 재고 감소로 인한 것임
- 투자는 2011년 9%, 2012년 6% 감소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17% 감소함
- 투자수익률은 2011년 146%, 2012년 124% 감소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3.1%에 도달함

〈표 III-23〉 EU 역내 산업의 수익성, 현금흐름, 투자 및 투자수익률

Profitability, cash flow, investments and return on investments

	2010	2011	2012	Investigation period
Profitability of sales in the Union to unrelated customers (% of sales turnover)	-0.6	-1.3	-2.1	-1.6
Index	-100	-214	-330	-253
Cash flow (million EUR)	-199	107	-10	-39
Index	-100	54	-5	-20
Investments (million EUR)	1,504	1,375	1,279	1,244
Index	100	91	85	93
Return on investments (%)	-1.2	-2.9	-4.3	-3.1
Index	-100	-246	-370	-269

자료: Sampled Union producers

□ 결론적으로 조사기간 동안 중국과 대만의 덤핑 수입 물품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EU 산업에 대한 주요 피해 지표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음

- 생산량 5% 감소, 설비가동률 8% 감소
- 노동비용은 8% 증가한 반면 고용은 11% 감소

□ 상기 내용을 토대로 EU 집행위는 EU 산업이 반덤핑규칙 제3조 제5항(공동체산업

에 대한 결과적 효과)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함

- 특히 2010년부터 조사기간 도중 중국 기업들이 덤핑물품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EU 역내 산업에 대한 주요 피해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지적함
- 한편 EU는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덤핑 소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철강업계의 가격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판정 결과 EU 집행위는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냉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해 제조기업별로 10.9~25.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 내외,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는 11% 내외의 관세를 부과함

### 3)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sup>66)</sup>

가) 개요

□ 2016년 2월 28일 EU 집행위는 한국에서 수입된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2016년 1월 4일 유럽감열지협회(ETPA)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유럽 내 총생산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함

6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2005 of 16 November 2016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lightweight thermal paper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R2005>(검색일자: 2018. 5. 16.)

〈표 III-24〉 EU 사례 3)의 개요

Commodity	Initiation	Country	HS code
lightweight thermal paper	2016-2-28	Korea	480990, 481190, 481690, 482390

- 피제소국: 한국
- 품목: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 조사개시일: 2016. 2. 28.

자료: WTO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유럽감열지협회(ETPA)는 2012~2015년 기간 중 경량감열지 제품의 EU 역내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산 제품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는데, 이는 덤핑 수입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산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나) 상세내용

- 반덤핑 조사기간인 2015년의 EU의 역내 소비량을 살펴보면, 18만 9천~19만4천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2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EU 산업의 소비량

Union consumption (tonnes)

	2012	2013	2014	Investigation period
Total Union consumption	163,000-168,000	178,000-183,000	178,000-183,000	189,000-194,000
Index	100	109	108	115

자료: injury and dumping questionnaires

- 한국산 덤핑 수입 물량은 2015년 기준 총 2만 3천~2만 8천톤으로 2012년(1천~2천톤)에 비해 22.8배, 시장점유율 또한 2012년 0.7%, 2013년 8%, 2014년 12.4%, 2015년 1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I-26〉 EU 역내 피제조국의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 Import volume (tonnes) and market share

	2012	2013	2014	Investigation period
Volume of Imports from the country concerned (tonnes)	1,000-2,000	12,000-17,000	19,000-25,000	23,000-28,000
Index	100	1,268	1,949	2,279
Market share (%)	0.7	8.0	12.4	13.6
Index	100	1,169	1,801	1,975

자료: dumping and injury questionnaires

- 반면 덤핑 수입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의 수입가격은 2012년에는 톤당 1,400~1,500유로에서 2015년에는 1,200~1,300유로로 오히려 15% 하락함

〈표 III-27〉 EU 역내 피제조국의 수입가격

## Import price (EUR/tonnes)

	2012	2013	2014	Investigation period
Average price of Korean imports	1,400-1,500	1,450-1,550	1,300-1,400	1,200-1,300
Index	100	103	92	85

자료: dumping questionnaires

- 조사기간 동안 EU 산업의 역내 판매량은 1% 증가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한국산 덤핑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96.9%에서 85.1%로 약 12%p 감소함

〈표 III-28〉 EU 역내 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Sales volume and market share

	2012	2013	2014	Investigation period
Sales volume on the Union market (tonnes)	159,000-164,000	160,000-165,000	153,000-158,000	160,000-165,000
Index	100	101	97	101
Market share (%)	96.9	90.3	86.7	85.3
Index	100	94	90	88

자료: injury questionnaires and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complainant

- 조사기간 동안 EU 역내 판매가격은 평균 생산단가보다 낮았는데, 생산비용이 3% 증가한 반면 판매가격은 평균 11% 감소하였음
  - 이는 한국산 덤핑 수입 물품으로 인해 EU 생산기업들은 판매수준을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역내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결과임

〈표 III-29〉 EU 역내 산업의 판매가격 및 생산비용

Sales prices in the Union

	2012	2013	2014	Investigation period
Average net sales price in the Union on the market (EUR/tonnes)	1,316	1,297	1,181	1,176
Index	100	98	90	89
Unit cost of production (EUR/tonnes)	1,177	1,176	1,155	1,215
Index	100	100	98	103

자료: injury questionnaires

- 한편 EU 집행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덤핑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으로 구성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그리고 평균가격을 함께 조사하였음

- 제3국으로부터의 수출규모는 2012년 3,500~5,000톤에서 2015년 2,000~3,500톤으로 감소했으나, 판매가격은 톤당 799유로에서 1,147유로로 43% 상승한 바, 결국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평균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30〉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시장점유율, 평균가격

Imports from third countries

		2012	2013	2014	Investigation period
Total of all third countries except the country concerned	Volume (tonnes)	3,500-5,000	2,000-3,500	1,500-3,000	2,000-3,500
	Index	100	75	44	63
	Market share (%)	2.4	1.7	1.0	1.3
	Average price (EUR)	799	631	677	1,147
	Index	100	79	85	143

자료: dumping questionnaires and ETPA's estimates

- 상기 내용을 토대로 EU 집행위는 EU 산업이 반덤핑규칙 제3조 제5항(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함
  - 특히 2012년부터 조사기간 도중 한국 기업들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의 실질적 증가가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의 하락을 야기했다고 지적함
- 최종판정 결과 EU 집행위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경량감열지에 대해 톤당 104.46 유로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EU 집행위는 2016년 11월 17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sup>67)</sup>한 바 있으며, 2017년 5월 3일 반덤핑 최종판정결과를 발표함

67) Regulation (EU) No 2016/2005

## 4. 호주

### 가. 반덤핑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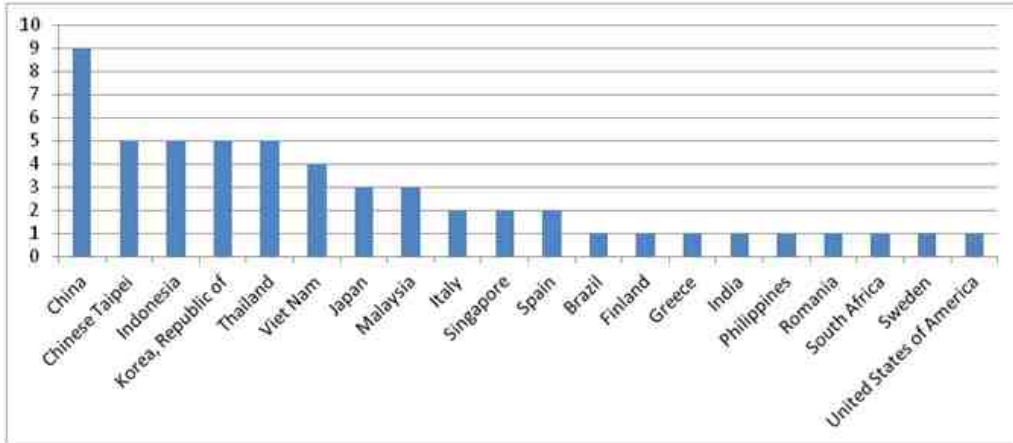
- WTO에 따르면 2000~2017년 기간 중 호주의 對세계 반덤핑규제(확정 조치)는 총 80건으로 집계됨<sup>68)</sup>
  - 상기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2000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반덤핑조사 개시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따라 2가지 구간 ① 호주의 최초 반덤핑규제 조회시점부터 최근 5년 이전(2000~2012년) ② 최근 5년간(2013~2017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최근 5년간(2013~2017년) 반덤핑규제 건수는 총 54건이며, 중국이 9건으로 1위, 우리나라가 총 5건으로 2위를 차지함
  - 중국에 이어 대만·인도네시아·한국·태국 각 5건, 베트남 4건, 일본·말레이시아 각 3건, 이탈리아·싱가포르·스페인 각 2건, 브라질·핀란드·그리스·인도·필리핀·루마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웨덴·미국 각 1건 순임

---

68)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23.)

[그림 III-39] 최근 5년간 호주의 반덤핑조사 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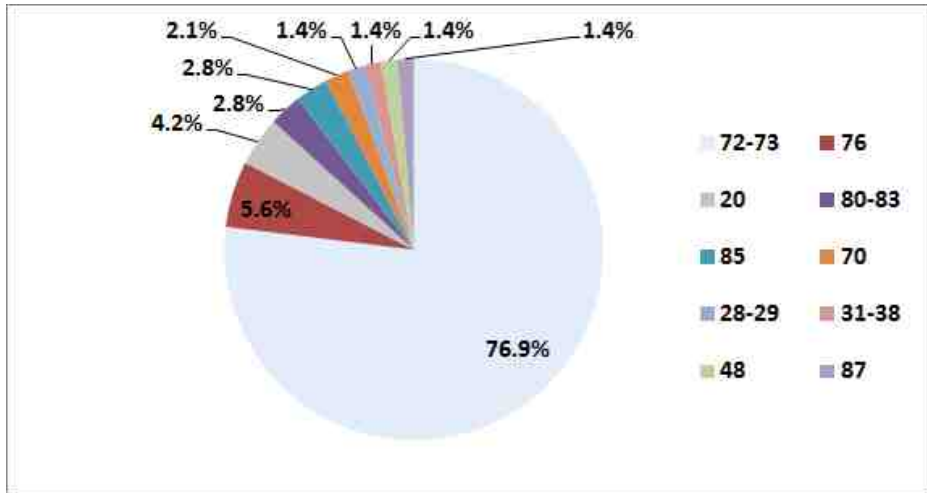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호주는 전체 조사기간(2000~2017년) 중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최근 5년간 품목 구성의 변화가 나타났음
- 2000~2012년 기간 중 호주의 반덤핑 품목은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이 76.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품목으로 구성됨
  - 알루미늄과 그 제품(76류) 5.6%,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4.2%, 전기제품(85류) 2.8%, 유리와 유리제품(70류) 2.1%, 무기 및 유기화학품(28~29류) 1.4%, 비료 및 화학공업제품(31, 38류) 1.4%, 지와판지(48류) 1.4%, 일반차량(87류) 1.4% 등으로 구성됨

[그림 III-40] 호주의 2000~2012년 기간 중 품목 구성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2013~2017년 기간 중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이 총 8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들어 품목 구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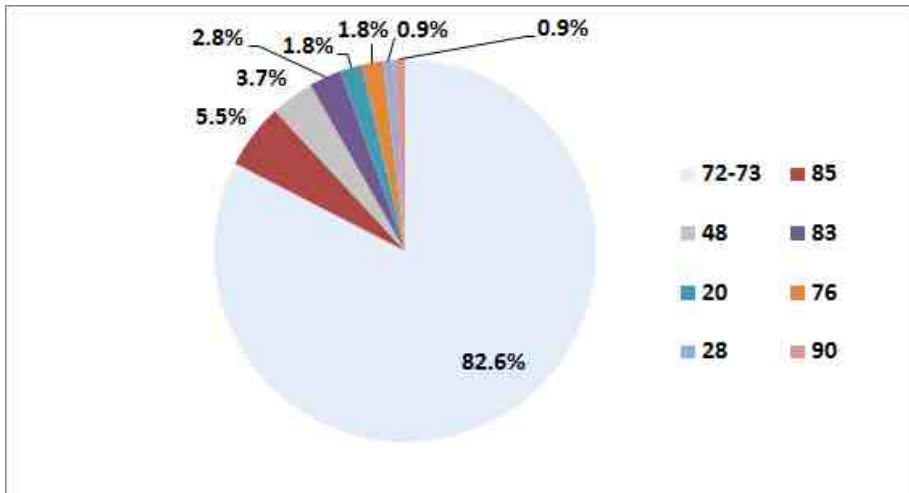
○ 전기제품(85류) 5.5%, 지와판지(48류) 3.7%, 각종 비금속제품(83류) 2.8%, 알루미늄과 그 제품(76류) 1.8%, 무기화학품(28류) 0.9%, 90류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90류) 0.9% 등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규제는 WTO 통계기간 동안 총 9건이었으며 철강제품(HS 72~73류)이 총 100%로 전부를 차지함

○ 상기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호주 조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2018년 3월 19일 지와판지(48류)에 해당하는 A4 복사용지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실시함<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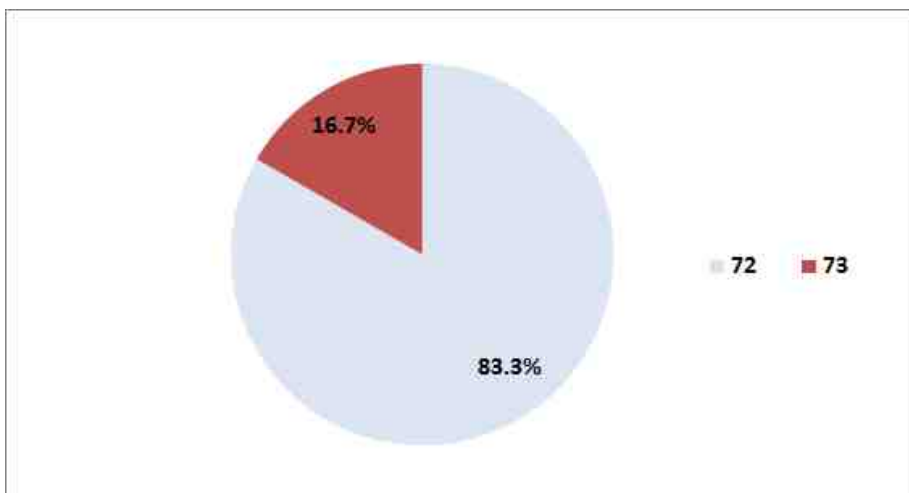
69) 호주반덤핑위원회, <http://www.adcommission.gov.au/cases/Pages/CurrentCases/ADC-463.aspx> (검색일자: 2018. 5. 9.)

[그림 III-41] 호주의 2013~2017년 기간 중 품목 구성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그림 III-42] 호주의 對韓 반덤핑규제 대상품목



자료: WTO, <http://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에서 각 연도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자: 2018. 5. 9.)

##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호주는 1906년 반덤핑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입법화<sup>70)</sup>하였고, 케네디라운드 및 동경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1975년 반덤핑조항 개정, 1995년 WTO 출범 이후 반덤핑법을 개정해 왔으며,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Customs Act 1901
  - Customs Tariff(Anti-Dumping) Act 1975
  - Customs Regulations 1926(180, 181, and 181A)
  -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
  
- 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 제269TAE조에서는 호주 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호주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호주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할 경우 상기 규정을 조건으로 함<sup>71)</sup>
  
- 호주 관세청은 반덤핑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다음 6가지의 판별 절차를 거치고 있음
  - 1. 수입품들이 유사 제품인가
  - 2. 수입품들이 덤핑이 되었는가
  - 3. 호주 산업에 피해가 있는가
  - 4. 피해가 덤핑에 의한 피해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가
  - 5. 덤핑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는 실질적인가
  - 6. 어느 정도 수준의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70) Industries Preservation Act 1906

71) Customs Act 1901 Sect 269TAE 제(1)항

- 반덤핑관세는 덤핑 사실이 있더라도 수입품의 덤핑으로 호주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았을 경우 또는 덤핑으로 인해 호주에서 해당 산업의 형성 자체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hinder)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음
  - 덤핑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임금효과와 고용효과 등 관련 산업의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고려될 수 있음
  - 따라서 반덤핑 조사는 덤핑으로 인해 발생한 자국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덤핑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나 소비자의 선호에 의한 수요 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당되지 않음
  
- 제269TAE조 제(2A)항은 호주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
  - 덤핑되지 않은 동종 수입품의 수량과 가격
  - 보조금을 받지 않은 동종 수입품의 수입량과 가격
  - 소비의 위축 또는 소비 패턴의 변화
  - 동종물품에 대한 외국 생산자와 호주 생산자 간 제한적인 무역 관행 또는 경쟁
  - 호주 산업의 수출 성과 및 생산성
  
- 제269TAE조 제(2AA)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에 대한 판정은 혐의, 추측, 희박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함
  
- 제269TAE조 제(3)항은 호주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경제적 요소 또는 호주로 수출되는 제3국의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동종물품의 수량
  - 동종물품의 생산능력 및 설비가동률
  - 동종물품의 매출

- 동종물품의 이윤
  - 해당 산업의 투자수익률 및 현금흐름
  - 해당 산업의 고용률 및 임금 수준, 고용조건(노동시간 포함)
  - 해당 산업의 시장점유율
  - 해당 산업 종사자의 자본 확충 능력
  - 해당 산업의 투자
- 한편 2012년 4월 27일에는 실질적 피해에 대한 장관의 새로운 재량을 명시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바, 예견된 수익이나 확장세에 있던 시장점유율의 상실이 피해로 고려될 수 있다는 기존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됨
- 관련 산업에 대한 수익의 감소 없이 시장점유율의 손실을 겪는 것만으로 실질적 피해의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음
  - 특히 시장점유율의 하락은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관련된 피해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덤핑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이 호주 시장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최소기준은 없음

#### 다.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호주 사례의 경우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철강제품(72류)과 지속적으로 반덤핑규제 품목에 포함된 전기제품(85류), 지와판지(48류)를 조사함
- 호주가 우리나라에 제소한 반덤핑 규제 품목은 모두 철강제품(72~73류)이며, 2018년 3월 지와판지(48류)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철강(72류)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반덤핑규제를 받은 이후 반덤핑 면제조사를 받았음
- 2013년 2월 덤핑 예비판정, 2015년 6월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전기제품(85류)에 해당하는 변압기(Power transformers)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반덤핑규제를 받았으며, 최근 2018년 3월 미국에서도 한국산 전력 변압기에 대해 60%대의 고율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음
- 지와판지(48류)에 해당하는 A4 복사용지(A4 copy paper) 품목의 경우 2018년 3월 19일자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러시아, 슬로바키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음

### 1)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sup>72)</sup>

#### 가) 개요

- 2012년 9월 5일 호주 관세청은 중국, 한국, 대만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제조기업(Blue Scope)은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을 제조, 호주 내 건설업, 제조업, 자동차 및 교통 산업에 해당 제품을 납품해왔음

〈표 III-31〉 호주 사례 1)의 개요

Commodity	Initiation	Country	HS code
Aluminium zinc coated steel	2012-09-05	China, Korea, Chinese Taipei	721061

- 피제조국: 중국, 한국, 대만
- 품목: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 조사개시일: 2012. 9. 5.

72) 호주반덤핑위원회(2013)

〈제소자의 산업 피해 주장〉

Blue Scope claimed that material injury in respect of aluminium zinc coated steel commenced in 2010-11 and was exacerbated in 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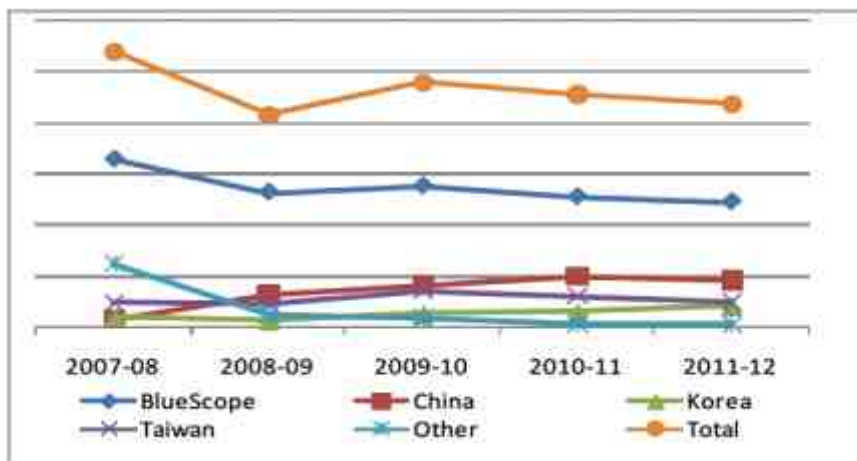
자료: WTO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호주 제소기업은 중국, 한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덤핑된 수입품이 증가하면서 호주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특히 2010년부터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강조함

나) 상세내용

- 호주 제소기업의 판매량은 2009~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중국, 한국, 대만으로 구성된 피제소국 대상 수입제품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10~2011년부터 덤핑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2011~2012년에는 피해가 더 악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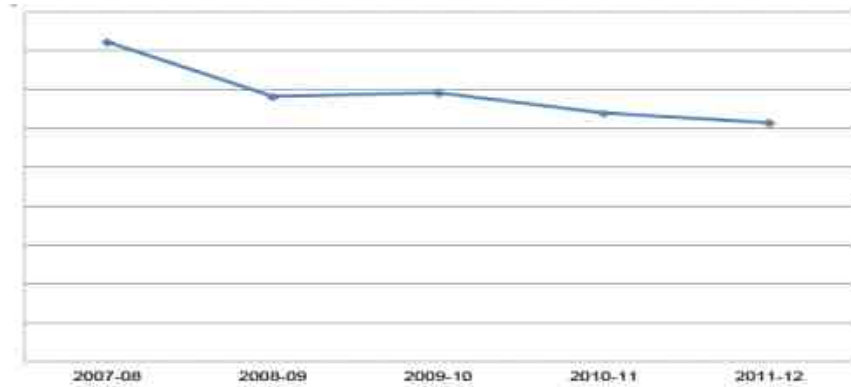
[그림 III-43] 호주의 피제소국 대상 수입제품의 추이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3)

□ (양적효과) 제소기업의 국내 판매량은 2009~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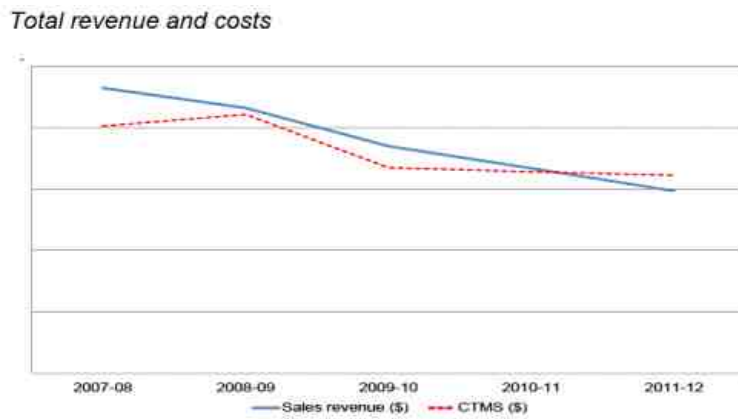
[그림 III-44] 호주 제소기업의 국내 판매량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3)

□ (가격효과) 제소기업의 총판매수익과 비용(제조 및 판매원가)은 2009~2010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2011~2012년에는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격억제를 나타냄

[그림 III-45] 호주 제소기업의 총판매수익 및 비용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3)

- (수익효과) 제소기업의 총이윤 및 수익성은 2009~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한 바, 특히 2011~2012년에는 기하급수적인 감소를 보였음

[그림 III-46] 호주 제소기업의 총이윤 및 수익성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3)

- 상기 주요 경제지표에 기초하여 제소기업은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됨
  - 판매량 감소(loss of sales volume)
  - 매출 감소(reduced sales revenues)
  - 가격 하락(price depression)
  - 가격 억제(price suppression)
  - 이윤 및 수익성 감소(reduced profit and profitability)
  
- 호주반덤핑위원회는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덤핑 수입은 현지 업체의 판매량, 매출, 시장점유율을 감소시켰으며, 제품 판매 가격이나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함

- 최종판정 결과 호주 관세청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 철강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3.2%에서 최고 28.5%, 중국의 철강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최고 62.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 2) 전력 변압기(Power transformers)<sup>73)</sup>

### 가) 개요

- 2013년 7월 29일 호주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전력 변압기(Power transformers)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표 III-32〉 호주 사례 2)의 개요

Commodity	Initiation	Country	HS code
Power transformers	2013-07-29	China, Indonesia, Korea, Chinese Taipei, Thailand, Vietnam	850422, 850423

- 피제조국: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 품목: 전력 변압기(Power transformers)
- 조사개시일: 2013. 7. 29.

#### 〈제조자의 산업 피해 주장〉

WTC claimed that injury commenced with the significant increase in imports in 2007-08.

자료: WTO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제조 기업(Wilson Transformer Company Pty Ltd)은 2007~2008년 덤핑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적 피해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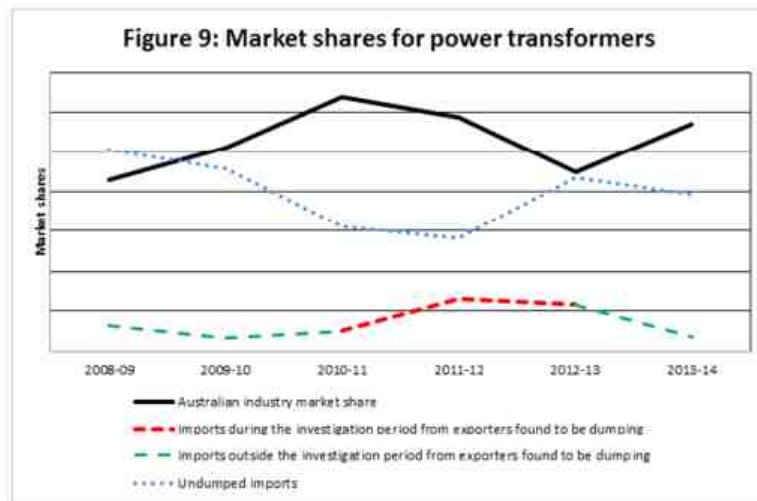
73) 호주반덤핑위원회(2014)

- 호주 변압기시장에서 최근 몇 년간 저가의 아시아산 변압기 공급이 급증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지 제조사는 덤핑 문제를 제기하였음
  - 특히 고환율 및 고비용 구조로 인해 현지 주요 제조업체인 ABB와 Alstom 등과 같은 기업들은 국내 생산 시설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였음
- 제조기업의 반덤핑 근거 서류에 따르면 아시아산 변압기와 현지 생산 변압기 제품은 30%가량의 가격 차이가 있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현지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임

나) 상세내용

- 호주 변압기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조사기간 동안 호주 산업의 매출액은 감소하였고, 덤핑 수입 물량은 2011~2012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2~2013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의 움직임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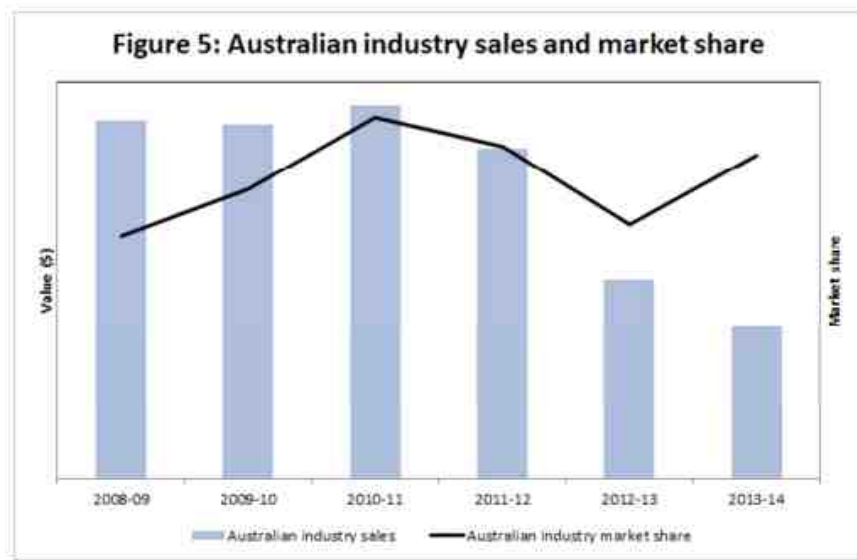
[그림 III-47] 호주 변압기 산업의 시장점유율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4)

- (양적효과) 제소기업의 판매량은 2009~2010년부터 2013~2014년까지 감소, 시장 점유율은 2008~2009년부터 2011~2012년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2012~2013년에는 40%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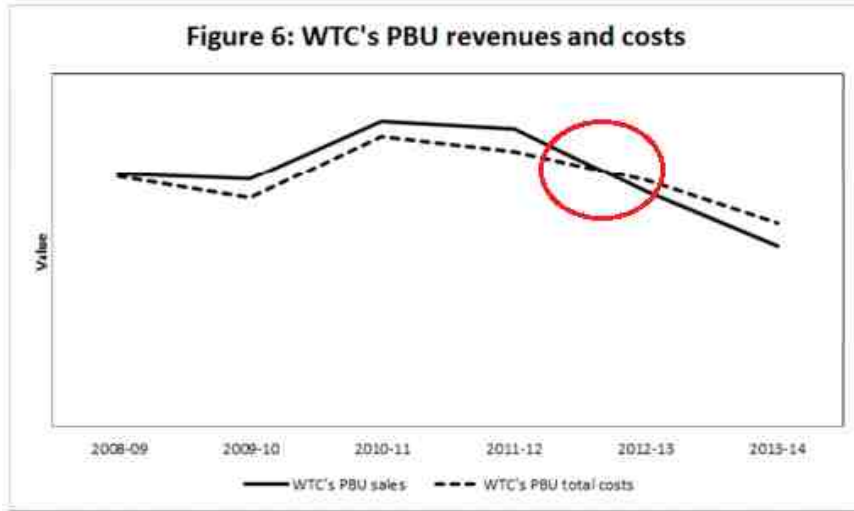
[그림 III-48] 호주 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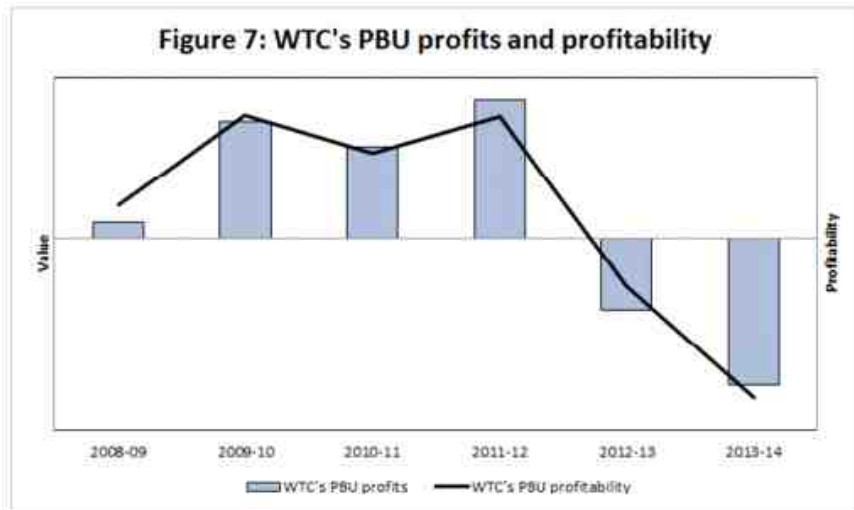
- (가격효과) 제소기업의 총비용은 2012~2013년과 2013~2014년에 총매출을 초과함에 따라 가격인하와 가격억제를 경험함
- (수익효과) 제소기업의 변압기 판매에 대한 이윤 및 수익성은 2008~2009년부터 2011~2012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2012~2013년과 2013~2014년에는 모두 하락함으로써 이윤 및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그림 III-49] 호주 제소기업의 총매출 및 총비용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4)

[그림 III-50] 호주 제소기업의 총이익 및 수익성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4)

- 상기 주요 경제지표에 기초하여 제소기업은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됨
  - 판매량 감소(loss of sales volume)
  - 시장점유율 하락(reduced market share)
  - 가격 하락(price undercutting) 및 가격 억제(price suppression)
  - 매출 감소(reduced revenues)
  - 이윤 및 수익성 감소(reduced profit and profitability)
  - 투자 수익 감소(reduced return on investment)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저하(reduced capacity utilisation)
  - 고용 감소(reduced employment)
  
- 호주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의 일부 수출업체들이 덤핑 가격으로 변압기를 수출함으로써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정함
  
- 최종판정 결과 호주 관세청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일부 제조사 (Unelec)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림
  - 그러나 대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관련 제조사는 반덤핑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음

### 3) A4 복사용지(A4 Copy Paper)<sup>74)</sup>

#### 가) 개요

- 2016년 4월 12일 호주 관세청은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A4 용지(A4 copy paper)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제소기업(Paper Australia Pty Ltd)은 호주에서 A4 용지를 독점생산하는 기업임

---

74) 호주반덤핑위원회(2017)

〈표 III-33〉 호주 사례 3)의 개요

Commodity	Initiation	Country	HS code
A4 copy paper	2016-04-12	Brazil, China, Indonesia, Thailand	480256

- 피제소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 품목: A4 용지(A4 copy paper)
- 조사개시일: 2016. 4. 12.

〈제소자의 산업 피해 주장〉

- Australian Paper claimed that it suffered material injury through lost sales volumes and reduced market share
- Australian Paper claimed that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in both the Chinese and Indonesian markets

자료: WTO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제소기업은 피제소국에서 덤핑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내 A4 용지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되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제소기업은 피제소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특별한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sup>75)</sup>이 존재한다고 주장함<sup>76)</sup>
  -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A4용지의 국내 판매가격은 정상가격(normal value)을 결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75) 호주는 2005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반덤핑법상 비시장경제에 적용하는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호주 조사당국은 '특별한 시장상황'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기업의 국가소유, 산업에 대한 깊은 정부 영향력, 보조금지급, 개입적 무역정책 등이 '특별한 시장상황'에 있는 것으로 취급함을 정당화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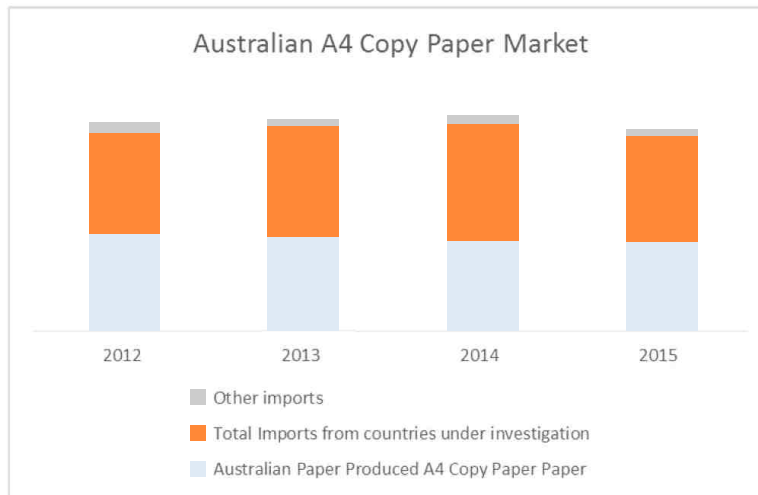
76)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호주 관세법은 특정 시장상황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 매뉴얼이 정상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특정 시장상황을 규정하고 있음(수출국 내수시장의 수요경향이 호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상당한 물물교환(Barter Trade)의 존재, 비상업적 과정의 존재)

- 중국의 펄프 및 제지산업은 주요 전략(권장) 산업으로 ‘제지 산업의 제12차 5개년 계획(12th Five Year Plan of the Paper Industry)’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대상에 속함
- 인도네시아의 펄프 및 종이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 산업 정책(National Industry Policy)으로 우선순위 산업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 속함

나) 상세내용

- 호주의 A4 복사용지 시장을 살펴보면 조사기간(2015년) 동안 제소기업은 호주 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판매량 손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실제로는 조사기간 동안 제소기업은 약 2%의 시장점유율을 얻었고 피제소국의 시장점유율은 약 1.5%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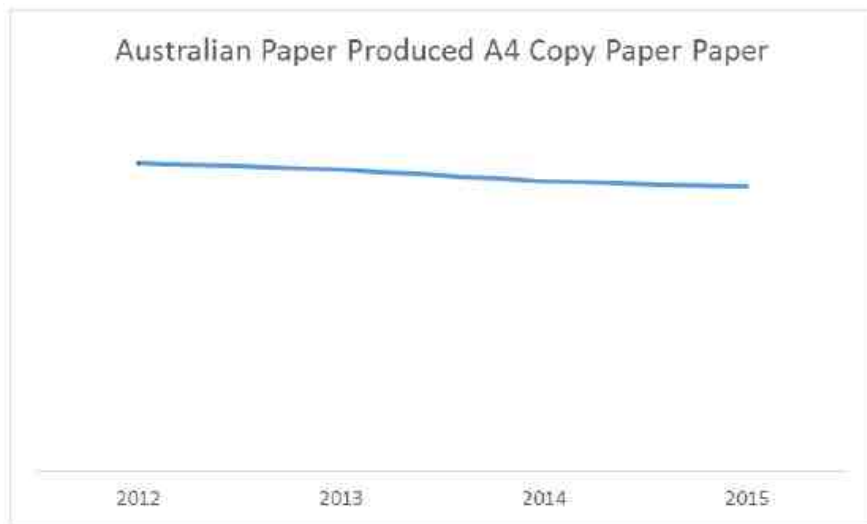
[그림 III-51] 호주의 A4 복사용지 시장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7)

- (양적효과) 결론적으로 조사기간(2015년) 동안 제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호주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판정함

[그림 III-52] 호주 제소기업의 국내 시장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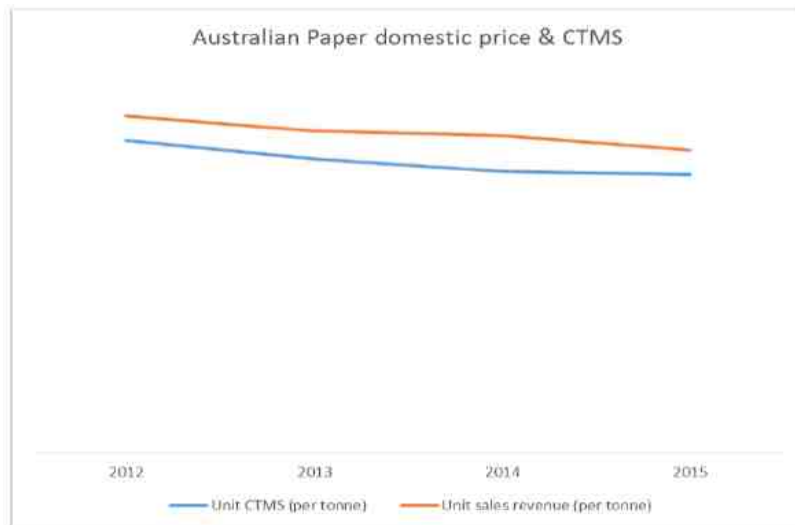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7)

- (특별한 시장 상황) 호주반덤핑위원회는 특별한 시장 상황(PMS)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제소기업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정함<sup>77)</sup>
  - 조사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생산자를 위한 목재 농장의 개발과 목재 통나무 수출 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국의 목재 및 펄프 산업에 관여하며 인도네시아 국내시장 가격의 왜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A4용지의 국내 판매가격이 관세법 제269TAC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상가격(normal value)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함

77) 동 조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소하였으며 WTO 역시 해당 조사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고 이러한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수 시장 상황'의 이유로 해당 반덤핑 조치는 지속되고 있음

- (가격효과) 조사기간(2015년) 동안 제소기업은 가격하락과 가격억제의 형태로 피해를 경험함
  - 조사기간 동안 제조 및 판매원가(CTMS)가 일관되게 감소했다는 것은 가격하락을 나타내는 것임
  - 이는 결국 가격하락이 제조 및 판매원가(CTMS)의 감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억제를 나타내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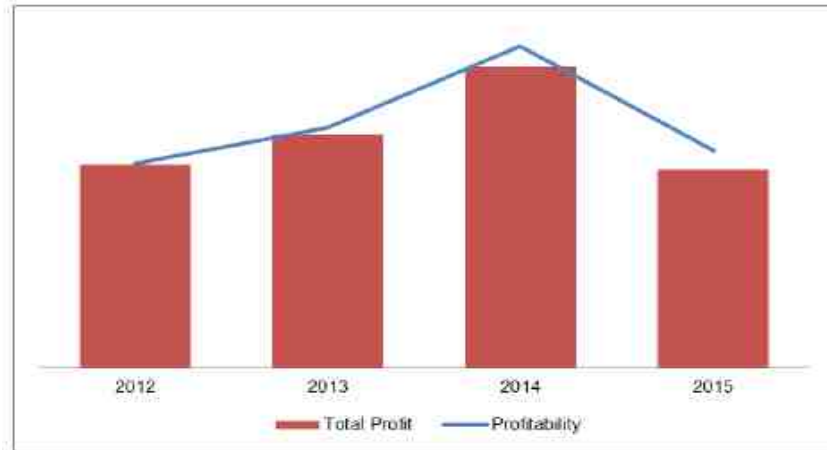
[그림 III-53] 호주 제소기업의 국내가격 및 제조 및 판매원가(CTMS)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7)

- (수익효과) 조사기간(2015년) 동안 제소기업은 이윤과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하며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판정함

[그림 III-54] 호주 제소기업의 이윤 및 수익성



자료: 호주반덤핑위원회(2017)

- 상기 주요 경제지표에 기초하여 제소기업은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됨
  - 판매량 감소(loss of sales volume)
  - 가격하락(price depression) 및 가격억제(price suppression)
  - 이윤 및 수익성 감소(reduced profits and profitability)
  - A4용지의 매출 감소(reduced revenue from A4 copy paper)
  
- 호주반덤핑위원회는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이 호주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정함
  - A4 용지의 덤핑 및 보조금 수입 물량은 조사기간 동안 호주 시장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산업에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함
  
- 최종판정 결과 호주 관세청은 '특별한 시장 상황(PMS)'이라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A4용지에 대해 12.6~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 한편 2017년 8월 상기 판정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WTO에 이의제기를 하였음

## 5. 주요국의 사례 요약 및 비교

### 가. 반덤핑 조치 현황

-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총 356건이며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총합은 87건으로 약 24.4%를 차지함
  - 주요국 중 미국(47건), 호주(15건), EU(13건) 및 중국(12건) 순으로 조사 개시의 빈도가 높았음
  
- 주요국의 최근 5년간 반덤핑 조치 최다규제 대상국은 중국으로 총 53건이며 우리나라(30건), 인도(16건), 그리고 대만(15건) 순으로 집계됨
  -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모두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28건)이 1위이며 우리나라(16건), 인도(9건), 대만(8건) 및 터키(7건)의 순임
    - EU는 중국(16건)이 1위이며, 러시아(5건), 우리나라(3건), 대만(2건), 인도(2건) 순임
    - 호주는 중국(9건)이 1위이며, 대만,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태국(각 5건), 일본·말레이시아(각 3건), 이탈리아·싱가포르·스페인(각 2건), 브라질·핀란드·그리스·인도·필리핀·루마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웨덴·미국(각 1건) 순임
  - 중국은 미국(14건)이 1위이며, 일본(12건), EU(12건), 우리나라(6건) 및 인도(5건)의 순임
  
- 주요국의 최근 5년간 반덤핑 조치 최다규제 품목은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으로 전체품목 중 총 70.4%를 차지함
  - 미국은 전체 품목 중 철강제품(72~73류)에 약 85%의 반덤핑 조치를 진행했으며 WTO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철강제품을 규제함

- 중국은 전체 품목 중 유기화학제품(29류)과 철강제품(72~73류)에 각각 24% 정도 반덤핑 조치를 진행함
    - 2000년 초중반 화학제품(28~29류)의 반덤핑규제가 빈번했던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철강제품(72~73류), 펄프와 종이(48~49류) 및 인조섬유(55류) 등에 더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추세임
  - EU는 전체 품목 중 철강제품(72~73류)에 약 90.1%의 반덤핑 조치를 진행하여, 1995~2012년 동안 동일품목에 약 43.1% 규제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함
  - 호주는 전체 품목 중 철강제품(72~73류)에 약 82.6%의 반덤핑 조치를 진행함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의 반덤핑 조치 최다규제 품목은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으로 전체 품목 중 총 73.7%를 차지함
-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 모두 철강 및 철강제품(72~73류)에 반덤핑 조치를 진행함
    - 전체 반덤핑 규제 품목 중 미국은 약 95%, EU는 약 58.8%, 그리고 호주는 100%를 차지함
  - 중국은 전체 품목 중 약 41%를 무기·유기화학제품(28~29류)에 반덤핑 조치를 진행함

〈표 III-34〉 주요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 국제비교

주요국	최다 규제대상국	최다 규제품목	
		對(대) 전 세계	對(대) 우리나라
미국	중국(28건)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73류)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73류)
중국	미국(14건)	유기화학제품 (HS 29류)	무기·유기화학제품 (HS 28~29류)
EU	중국(16건)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73류)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73류)
호주	중국(9건)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73류)	철강 및 철강제품 (HS 72~73류)

주: 1. 최근 5년(2013~2017) 기준  
 자료: 본문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 '실질적 피해'와 관련한 주요국의 법적 근거는 WTO 반덤핑협정을 모태로 삼아 국내법화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함
  - 미국 연방법전(US Code) 제1671조부터 제1677n조까지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부과, 산업피해구제방법 그리고 기타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연방규정집(C.F.R) 제351조와 제354조에서 상세내용을 규정함
  - 중국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인 「반덤핑 조례」에서 반덤핑조치의 전반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상무부가 제정한 「반덤핑산업손해조사규정」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 등의 인정기준과 조사방법 등 상세내용을 규정함
  - EU는 EU 반덤핑 기본규칙(2016/1036)을 두고 있으며, 제3조(피해의 결정)에서 실질적 피해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Customs Act 1901)에 두고 있으며, 제269TAE조에서 실질적 피해와 관련된 내용 전반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국 모두 WTO 반덤핑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자국 실정에 맞춰 구속력 있게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 중임
  - 미국의 경우
    - WTO 반덤핑협정과 달리 덤핑과 실질적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 피해를 판정할 때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 동종물품 생산자의 미국 내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은 반덤핑조치의 필요조건임
    - '피해판정요소'에 국내산업의 특유의 사업주기와 경쟁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WTO 반덤핑협정보다 보완된 규정을 운영 중임
  - 중국의 경우
    - 피해판정요소 중 다른 주요국에 없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라는 항목이 있어 해당 조문에 대한 중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

가 있음

- 덤핑 이외의 요소 검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피해 긍정판정인 경우 관행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따르고 피해 부정판정의 경우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타요소를 검토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sup>78)</sup>

○ EU의 경우

- 연합국가 특성상 피해는 공동체산업(Community industry)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및 공동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도 피해판정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려요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음
- 피해판정을 위한 3가지 검토 요소는 ① 덤핑 수입량 ② 공동체 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 ③ 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로 구분됨

○ 호주의 경우

- 실질적 피해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및 연관된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산업형성을 저해(hinder)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 실질적 피해를 평가할 때 임금효과와 고용효과 등을 포함하며,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다. '실질적 피해' 사례

- 국가별 피해요인은 주요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하락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각국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음
- 미국은 3건의 사례 중 2건이 미국 내 해당 물품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과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재무성과의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함

---

78) 안민호·이장원(2011), pp.40~41

- 1건은 미국 내 해당물품의 수요가 감소되었지만 이는 덤핑 이외의 요인(제품 원가의 하락이나 수요의존산업의 경기활성 등) 때문이 아닌, 덤핑물품의 단기간 수입급증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중국은 3건의 사례 중 2건이 덤핑물품의 수입이 급증한 시기부터 내수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대부분 경제지표 모두 하락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1건은 중국 내 수요증가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장했으나 오히려 설비가동률, 세전이익률, 투자수익률 등 경제지표가 하락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EU는 3건의 사례 모두 피해판정을 위한 3가지 검토 요소 중 '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와 관련된 산업피해를 주장하였음
    - 2건의 사례는 역내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생산기업의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역내 판매가격의 하락 등 주요 피해 지표의 악화를 주장함
    - 나머지 1건의 사례는 덤핑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역내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의 감소와 역내 판매가격의 하락 등 주요 피해 지표의 악화를 주장함
  - 호주는 덤핑 수입 증가에 따른 양적효과, 가격효과 그리고 수익효과와 관련된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특별한 시장 상황(PMS)'도 제기하였음
    - 2건의 사례는 저가의 아시아산 덤핑 수입품이 증가하면서 판매량 및 매출 감소,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하락 및 가격억제, 이윤 및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함
    - 나머지 1건의 사례는 판매량 및 매출감소,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하락 및 가격억제, 이윤 및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장 상황(PMS)'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함
- 상기 실질적 피해 주장 요인에 따른 국가별 사례의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은 3건의 사례 모두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 송유관의 경우 연례재심 예비조사 결과 긍정판결을 받았고, 강철못의 경우 연례재심 최종조사 결과 긍정판결을 받아 2건의 덤핑관세율이 재조정됨

- 중국은 3건의 사례 모두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 태양광폴리실리콘의 경우 최종판정 전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고, 반덤핑관세 중간 재심을 실시하여 덤핑관세율을 재조정함
- EU는 3건의 사례 모두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1건의 사례의 경우 혐의 조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수입물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호주는 2건의 사례에 대해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반면, 1건의 사례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림
  - 무혐의 판정을 내린 사례의 경우 피소국 가운데 일부 국가는 반덤핑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음

## IV. 결론

- 무역의존도가 높고 반덤핑조치 주요 대상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제소 국별 중점 규제 품목과 해당 산업의 제조자가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판정과 달리 피해판정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 국가의 피해판정이 중요함
  - 덤핑의 성립 요건 중 실질적 피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각 조사당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협정문 내 각주9를 통해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의미한다고 규정
- 피해판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이므로 충분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해당 국가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덤핑 수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관련 법적 근거와 조사개시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 피해의 주장 요인과 조사당국의 판정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어떤 요인에서 실질적 피해로 인정되는지 살펴보았음
- 주요국의 최근 5년간 반덤핑 규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 모두 철강제품(72~73류)에 집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 반덤핑 규제

의 타깃이 되어 왔음

- 중국의 경우 무기·유기화학제품(28~29류)에 대한 규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함

□ 또한 반덤핑조사에 있어서 국내산업 피해의 분석은 실질적 피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주요국의 법적 근거 및 사례는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었음

- 주요국의 법적 근거는 주요국 모두 WTO 반덤핑협정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관련 법령을 운영 중임

□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의 주장 요인은 주로 수입 물량 증가와 가격하락 야기 등 피해의 객관적 입증 방법에 근거한 것이 주를 이뤘고, 각 조사당국은 WTO 반덤핑협정 및 국내법적 근거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 피해를 판정하되,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였음

- 미국의 경우 피해판정 요소에 국내산업 특유의 사업주기와 경쟁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피해판정 요소에 국내 산업에 손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덤핑 이외의 요소 검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운영상 관행적인 측면이 있음
- EU의 경우 보다 정확한 덤핑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판정 요소에 제3국과의 경제지표를 참고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는 '공동체산업에 대한 결과적 효과'와 관련된 산업피해로 귀결됨
- 호주의 경우 피해판정 요소에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용효과와 '특별한 시장 상황(PMS)'을 참고하였음

- 주요국의 조사당국은 반덤핑조사 시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적 근거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판정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음
- 따라서 각국의 조사개시 보고서는 산업피해에 대한 판단의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반덤핑제소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규제품목에 대한 피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정보를 제공함
  - 반덤핑제소 시 실질적 피해라고 주장하는 품목에 대해 각 조사당국의 조사과정과 조사내용, 판정과정 및 논리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반덤핑조치의 확산에 따라 실질적 피해를 주장하는 요인 또한 늘어나는 시점이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판정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주요국의 판정사례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피해판정에 대한 이해, 각국별 주요 규제 품목, 우리나라 대상 주요 규제 품목의 실질적 피해의 주장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상대국의 반덤핑제소 시 우리 기업은 철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당국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참고문헌

### 1. 국문 보고서

- 김용길,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6.8.
- 곽노성·마광·최송자·왕봉안, 「중국의 덤핑, 보조금 조치에 관한 연구」, 『(사)국제공정무역학회』, 2012.11.
- 신성식·최혜범,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2011.12.
- 안민호·이장완, 「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11.
- 오문갑, 「중국의 반덤핑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4.2.27.
- 이재형, 「WTO 반덤핑협정상 피해판정에 대한 법적 쟁점의 연구」, 『통상법률』 제81권, 2008.6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EU 집행위,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조사 종결 결정」, 2009. 4. 20
- 정혜선,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적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지』 VOL.13, 2018.5.
- 진성백, 「최근 주요 선진국의 반덤핑조사 재심시 산업피해 여부 주요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2016.5.

## 2. 영문 및 증문 보고서

호주반덤핑위원회, 「Dumping investigations ITR 190a and 190b - Zinc coated (galvanised) steel and Aluminium zinc coated steel exported from China, Korea, and Taiwan」, 2013. 5. 8.

호주반덤핑위원회, 「Dumping Investigation ADC 219 - Power Transformers Exported from China, Indonesia, Korea, Taiwan, Thailand and Vietnam」, 2014. 2. 12.

호주반덤핑위원회, 「Dumping Investigation ADC 341 - A4 Copy Paper exported from Brazil, China, Indonesia and Thailand. Goods Covered by the Investigation, 2017. 4. 19」, 2017. 4. 19.

Nippon Steel Corp. v. United States, 458 F.3d 1345, 1357 (Fed. Cir.2006); Taiwan Semiconductor Industry Ass'n v. USITC, 266 F.3d 1339, 1345 (Fed. Cir. 20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429 of 26 August 2015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aiwan」, 2015. 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2005 of 16 November 2016 imposing a provisional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lightweight thermal paper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2016. 1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95 of 5 October 2017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originating in Brazil, Iran, Russia and Ukraine and terminating the investigation on imports of certain

hot-rolled flat products of iron, non-alloy or other alloy steel originating in Serbia」, 2017. 10.

ITC, 「Ferrovanadium from Korea Investigation No.731-TA-1315(Final)」, 2017.5.

ITC, 「Welded Line Pipe from Korea and Turkey-Investigation Nos. 701-TA-525 and 731-TA-1260-1261 (Final)」, 2015.11.

ITC, 「Certain Steel Nails from Korea, Malaysia, Oman, Taiwan, and Vietnam-Investigation Nos. 701-TA-521 and 731-TA-1252-1255 and 1257 (Final)」, 2015.7.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華人民共和國苯乙烯產業申請對原產于韓國、台灣地區和美國的進口苯乙烯產品進行反傾銷調查」, 2017.06.23.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公告2017年第16号 關於對原產于韓國、日本和南非的進口甲基异丁基(甲)酮反傾銷立案公告」, 2017.03.27.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公告2012年第40号 對原產于美國和韓國的進口太陽能級多晶硅進行反傾銷立案調查的公告」, 2012.7.20.

### 3. 국문 홈페이지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

### 4. 영문 홈페이지

호주반덤핑위원회, <http://www.adcommission.gov.au>

EU Law, <https://eur-lex.europa.eu>

LII, <https://www.law.cornell.edu>

WTO 통계, <http://i-tip.wto.org>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http://trb.mofcom.gov.cn>

관세연구 18-03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

---

발 행 2018년 6월 29일

저 자 이동규 · 김다량 · 김미정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37-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8-03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